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2

0

2

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일러두기

본 책자는 학생의 권리보장과 책무의 이행을 통하여 학교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안내서입니다.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교육부 자료(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 등을 참고하였으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사항을 반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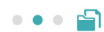
CONTENTS

제1장 학생생활규정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방법 요약	2
2. 학생생활규정의 이해	3
3. 학생생활규정의 운영	6
4.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7
5. 학생생활규정 관련 예시	14
6. 학생생활규정 관련 서식	20
7.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관련 Q&A 모음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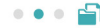
제2장 학생생활규정 개선안(예시자료)



1. 학생생활규정 목적의 명시	26
2. 학교구성원의 책무 명시	27
3. 불명확한 조항의 삭제	28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29
5. 표현의 자유	31
6. 교복 및 복장	32
7. 두발 및 용모	34
8. 소지품 검사	36
9.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37
10. 정보에 관한 권리	40
11.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41
12. 학생자치활동	42
13. 학생의 참정권 보장	43
14. 학생의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44
15. 학습권 보호	46
16. 학생인권 침해 행위와 보호 관련 Q&A 모음	51



제3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요약	56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57
3.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학교용 예시)	62
4. 고시 관련 서식	69
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Q&A 모음	80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 요약	88
2. 관련근거	89
3. 기본방침	89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90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흐름도	93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절차	94
7. 학교단위 불복 절차: 재심의	97
8.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	98
9. 그 밖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99
10.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별 활용 서식	100
1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예시	140
12. 통고제도 개요 및 절차	145
1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Q&A 모음	149

제5장 관련 법규



1.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158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163
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174
4.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77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제1장

학생생활규정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방법 요약
2. 학생생활규정의 이해
3. 학생생활규정의 운영
4.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5. 학생생활규정 관련 예시
6. 학생생활규정 관련 서식
7.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관련 Q&A 모음



학생생활규정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방법 요약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정·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교육지원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학생생활규정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학교 구성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교육해야 함.

번호	구분	내용	근거
1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2인, 교원, 학생, 학부모(보호자), 전문가로 구성되어 상시 운영 ※ 전문가 포함 필수, 전문가는 변호사, 교육 및 인권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 ▶ 교원 임면 또는 선출(학생수 이하), 학생 1/3 이상, 학부모회 추천 및 선출, 전문가 위촉, 학교장 제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임기는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최대 3년) ▶ 사임 시 새로 선출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만 활동 ▶ 간사 없이 위원회 운영 가능(간사를 두는 경우 간사는 위원 가능) 	
2	절차 (요약)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제정·개정안 발의→학교공동체 의견수렴→시안 마련→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공포 및 보고→제정·개정 규정 안내→적용 및 환류	
3	제정·개정안 발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에서 발의	
4	학교공동체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대상 의견수렴 ▶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 확보: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게 설문지 설문 구성, 방법 등에 유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5	시안 마련	▶ 의견수렴결과 통해 제정·개정안 시안 마련	
6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시안을 심의·확정하여 학교장 결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일반 정족수 개의,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 예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법령, 조례, 지침 등 반영 시 • 학생생활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의 일부 문구, 기구 명칭 등을 단순 변경·수정 시 ※ 심의 예외 사유 개정 시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생략하고 학교운영위원회만 거쳐 개정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로 개최해도 되고, 추후 열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도 됨. 공포를 언제 할 것인지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제1항, 제3항
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필수)	▶ 학생대표 참석하여 의견 개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4)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호
8	학교장 결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
9	공포 &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공포문에 시행일 명시 ▶ 학교알리미에 탑재(정보 공시(수시))(5일 이내) ▶ 제정·개정안 지원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개정한 규정, 신규대조표, 제정·개정절차확인체크리스트 • 상위법 반영으로 인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보고 생략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제4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1호
10	규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개정 내용 학생·교원에게 충분히 교육 ▶ 교원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객관성, 공정성 유지) 	
11	적용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결과 평가 환류, 의견수렴 ▶ 학교평가 시 등 포함 	

2 학생생활규정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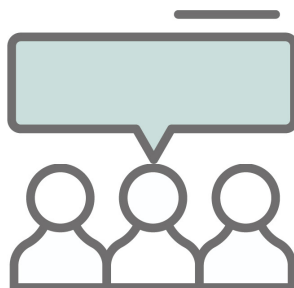


가. 학생생활규정의 개념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호, 제10호)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9호)으로 구성되고, 이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한다.

학교규칙의 구성(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학 교 규 칙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9. 학칙 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 개정절차



나. 학생생활규정의 의의

학생생활규정은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간이 되며,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에게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 학생

-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학교 자치 규범
-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하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규범
- 학교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의 근거

☞ 학부모(보호자)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 안내서
- 자녀의 생활교육에 대한 학부모(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안내서
-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범

☞ 교원

- 학생의 권리 보호와 책임 부과의 기준이 되는 생활교육 규범
- 통제나 징계보다는 참여와 자치, 책임을 우선하는 교육방법으로서의 규범
- 학생·학부모(보호자)의 학교생활 참여를 이끌어 내는 소통의 근거 규범

다. 학생생활에 대한 규정 자율성 확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 중 용모(두발·복장),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등 세부적 예시 사항 삭제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이 증대됨

개정 전		개정 후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개정(2020. 2. 25.)

라. 학생생활규정의 구성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규범으로 법규범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법정사항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의 권리보호와 책임에 관한 사항¹⁾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각 학교의 역사와 교육 가치, 문화적, 지역적 특수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에 정할 수 있다.

학생생활규정의 구성(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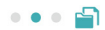
※ 아래 예시안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 삭제, 변경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음

구 분	항 목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명칭 • 적용근거와 목적 • 학생생활지도의 정의, 교육 3주체의 책무 •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범위, 방법 및 방식 • 학생생활규정 적용의 원칙(학생인권의 보장, 차별금지 조항 등 명시)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용과 환경보존 • 타인의 권리 존중 • 양성평등과 혐오 금지 •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수업태도 • 시간 준수 • 기타 학교생활 관련 사항
학생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교육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학교적응 최우선 지원, 체벌금지 등 • 교육목적상 필요한 생활교육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중, 방과 후, 교육상황별 생활교육 방법 등 • 학생징계의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사유 사전통지, 소명의 기회 보장 등 적법절차 준수 - 징계 사실의 공표 등 금지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 학생 징계의 종류와 조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확정, 통지 • 학교 내 재심의 • 퇴학에 대한 재심청구
학생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원칙 • 학생, 학생대표의 의견제출권 보장 • 자치활동의 조직, 기능 등 규정 위임조항
규정 제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규정개정안의 발의와 심의 절차

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정·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3

학생생활규정의 운영



구분	내 용
제정·개정	<p>☞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개정안 의견 조회 및 개정 필요성 여부 확인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발의안 마련, 의견수렴, 심의, 심의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생활규정 제정 또는 개정 사항 교육지원청 보고 • 제정 또는 개정 학생생활규정 학교알리미 탑재(정보 공시(수시)(5일 이내))
안내	<p>☞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안내·연수·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홈페이지 탑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탑재 • 학생생활규정 안내 자료 배부 • 가정통신문, 학부모(보호자) 문자 메시지 발송, 설명회 개최 • 학교알리미 탑재 <p>※ 정보공시항목-교육활동(학교규칙 및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p>
운영	<p>☞ 학생생활규정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교육적 생활교육 실시 <p>☞ 학생생활규정 운영 과정 상시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인권동아리 활동 • 학부모 총회 의견 청취 • 학교 홈페이지 및 의견 게시판 • 교직원 회의
평가·환류	<p>☞ 학생생활규정 운영 평가</p> <p>☞ 학생생활규정 평가 결과 환류</p>

※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시기는 단위학교 상황에 따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 학생생활규정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학교 구성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교육해야 함.

절차	참고	근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전문가로 구성(8인~12인으로 구성)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 1/3이상 되도록 구성 	
↓		
제정·개정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수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제정·개정 시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제정·개정 시안 마련 	
↓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시안을 심의·확정하여 학교의 장에게 결재받은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6조 제1항, 제3항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 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정·개정안 확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학교장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		
공포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 학교정보공시(수시)(5일 이내)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업무관리로 보고(제출서류: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절차 확인 체크리스트)(단, 상위법 반영으로 인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보고 생략)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6조 제4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초·중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		
제정·개정 규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공동체 대상 제정·개정 규정 안내 	
↓		
적용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생활규정 운영 결과 평가·환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분석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관련: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제1항~5항

☞ 방법 및 내용

-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교원, 학부모(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전문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전문가는 변호사, 교육 및 인권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위원장	위원의 구성			임기**
		구분	구성 방법	세부방법	
위원장 포함 8명~12명	위원 중 호선	교원	임면 또는 선출	- (임면) 학교장이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임면 - (선출)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 ※ 학생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최대 3년)
		학생	선출	-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 - 위원회의 1/3이상 되도록 구성 -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불가피한 경우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	
		학부모 (보호자)	위촉 또는 선출*	- (위촉)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 - (선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	
		전문가	위촉	- 교원, 학생, 학부모(보호자) 위원들이 추천하여 위촉 -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 재학생 학부모(보호자)는 불가)	

* 위촉 또는 선출의 방식 중 각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 위원의 졸업, 전학,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선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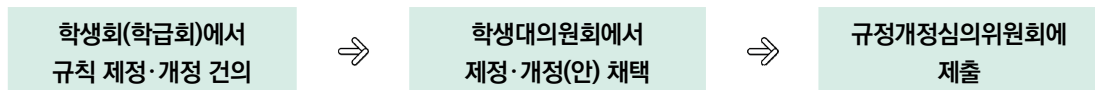
☞ 유의사항

-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학생 대표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참여 활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시간 등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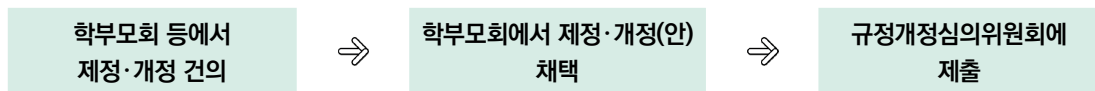
2.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 발의

☞ 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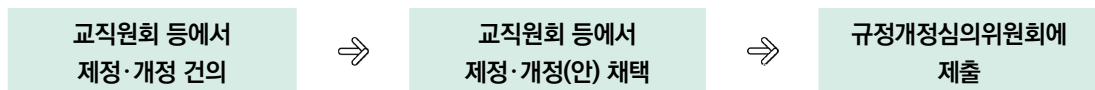
-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 발의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은 사전에 마련한다.
-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자치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을 통해 발의할 수 있다.
-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예시
 - 학생 발의



- 학부모(보호자) 발의



- 교원 발의



- 관련 법령이나 조례, 교육청 지침이 변경되어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한다.
- 학년말에 당해 연도 학생생활규정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여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개정안에 반영한다.

☞ 유의사항

-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발의 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3. 학교교육공동체 의견수렴

☞ 개정안 검토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학교규칙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한다.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내 합리적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은 삭제·수정한다.
-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관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한다.

의견수렴

- 대상: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 방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 학생

학급 단위	학년 단위	학생자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회의 ◦ 설문조사 ◦ 스티커 붙이기 ◦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 토론회 ◦ 설문조사 ◦ 스티커 붙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학생(안)

- 학부모(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 ◦ 설문조사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의견수렴 등) 	학부모(안)
---	--------

- 교원

◦ 부서별, 학년별 협의회	◦ 교직원 회의	교원(안)
----------------	----------	-------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별 의견수렴 자료를 토대로 1차 시안을 마련한다.
- 1차 시안은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유의사항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설문지 설문 구성, 방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관련 법적 근거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반할 경우 이는 형식적 측면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지 못한 규정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제정·개정 시안 마련

☞ 방법

-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최종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시안을 마련한다.

5.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제정·개정안 심의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시안을 심의·확정하고 제정·개정안을 학교의 장에게 결재받으며, 학교장은 제정·개정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예외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는 거쳐야 함)
 - 학생생활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의 일부 문구나 기구의 명칭 등을 단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 상위 법령, 교육청 지침의 제정·개정 사항을 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심의 절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정·개정안의 수립 배경,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 유의사항

-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의견수렴 등)

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 결재

☞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된 제정·개정 학생생활규정은 학교의 장에게 결재를 득한다.
-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8. 학생생활규정 개정 확정·공포·시행

☞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확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한다.
- 학교 구성원들이 제정·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 유의 사항

- 공포문에는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창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한다. 학교규칙은 공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공시할 수 있다.
※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면 관련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학생생활교육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관련 서류) ① 학생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 ③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확인 체크리스트(※서식 참고)

9. 제정·개정 규정 안내

☞ 방법 및 내용

- 제정·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해 학생·교원에게 충분하게 교육을 실시한다.
- 교원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당한 학생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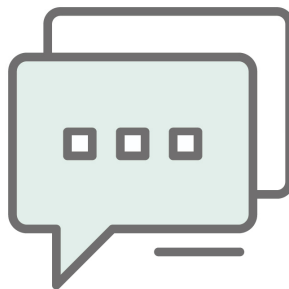
10. 적용 및 환류

☞ 방법 및 내용

- 학년 말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학생생활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학년도에 개정할 사항이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 학생생활규정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한다.

학생생활규정 운영 평가 검토사항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가?
-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규정이 갖추어져 있는가?
-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시 적합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 학생생활규정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시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 평소 학생생활규정을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며 공개하고 있는가?
- 학생생활규정의 내용과 구성원의 책무에 대해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안내하고 있는가?
-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5 학생생활규정 관련 예시

예시1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예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예시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회는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학생의 수가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대표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7조(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 (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의 장에게 결재를 받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1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시2 학생생활규정 안내



가정통신문

존경하는 학부모(보호자)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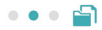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보호자)와 함께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 학생생활규정을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학생과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을 토대로 공동체의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책무성을 증진하는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중·고등학교장 ○ ○ ○

예시3 의견수렴 양식



가정통신문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드리는 바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초·중·고등학교장 ○○○

○○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예시1)

찬성	반대	기타 의견

(예시2)

관련 조항	의견	비고
제○조		
제○조		

20 년 월 일

학부모(보호자) 성명: (서명)
학 생 성명:

예시4 의견 제출안 양식

○○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제출

규정 항목	현행 규정	의견(안)	의견 제출 사유
예시) 제○조 교복	예시) 동절기 교복 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지만, 수업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단, 색상은 무채색이어야 함)	예시)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시) 교복 위 외투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건강권과도 관련이 있으며, 교복안의 옷이나 외투 색깔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개성실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학교 학생생활규정 중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학생회 회원들의 의견제출에 따라 ○○학교 대의원회를 거쳐 위와 같이 개정을 요청합니다.

20 . ○○. ○○.

○○학교 학생자치회장 ○○○ (서명)

붙임 대의원회 회의록 1부

예시5 토론회(공청회) 운영 예시

☞ 토론회(공청회) 순서

▶ 사회: 학생회장

순서		주관	주요내용
준비	◦토론회 기초 자료 준비 및 발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토론회 관련 교육	"	동영상 상영
1	◦토론회 개최 선언	사회자	
2	◦국민의례	"	
3	◦토론회 개최 배경 및 취지 안내	"	
4	◦토론자 소개	"	
5	◦인사소개(토론자)	"	
6	◦규정 개정안 관련 발제	발제자	발표 5분
7	◦규정 개정 사유 및 필요성 설명, 토의토론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 의견 발표	토론자, 사회자	발표 3분/1인
8	◦자유로운 질의·응답(토론자 간, 토론자와 방청객 간)	사회자	20분 정도
9	◦토의 및 결론 도출	토론자, 사회자	발표 3분/1인
10	◦토론회 폐회	"	

☞ 토론회(공청회) 운영 시 유의사항

- 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학교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결과, 의견 차이가 큰 과제를 쟁점 토론 주제로 선정한다.
- 토론회 주제, 일정 등 관련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등에 사전 공지한다.
-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각 대표가 가급적 동수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토론 결과를 공지한다.
- 토론회는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및 발언권을 갖도록 한다.

6

학생생활규정 관련 서식

서식1

학생생활규정 친구대조표 제출 예시(교육지원청 보고용)

구 분	작성 원칙
【조명과 조제목】	생략하지 않고 항상 기재한다.
【개정되는 부분】	개정되는 부분은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개정되지 않는 부분】	개정되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신 설】	신설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삭 제】	“(삭제)”라고 표시하고 밑줄을 친다.
【개정내용과 관계없는 부분】	“(현행과 같음)”이라 표시하되 밑줄은 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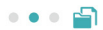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허가 사항) 학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 교사 및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캠핑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신 설)	제16조(허가사항) ① (삭 제)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휴일에 학교에서 단체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서식2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확인 체크리스트


절차	확인 사항	예	아니오	비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원, 학부모(보호자), 전문가로 구성되었는가?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8인~12인으로 구성되었는가?			
	•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였는가?			
개정안 발의	• 개정안 발의 주체가 적절하였는가?			
학교교육공동체 의견수렴	•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 학부모(보호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심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시안을 심의하였는가?			규정개정위원회심의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아니오'에 응답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적절하였는가?			규정개정위원회심의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아니오'에 응답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졌는가?			
공포 및 보고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였는가?			
	•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를 하였는가?			
	•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학교홈페이지에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하였는가?			
	• 제정·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 학생·교직원에게 안내하였는가?			

7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관련 Q&A 모음



Q1. 학생생활규정은 매년 개정해야 하나요?

A 매년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매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매년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면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신입생과 그 학부모(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학교문화와 변경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매년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지난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어도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안내·홍보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안내하고 그 내용도 교육해야 합니다.

- 매년 학교 홈페이지,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등을 통해 학생생활규정을 공시하고, 그 내용도 교육해야 합니다.
-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학부모(보호자) 교육, 가정통신문, 교원 연수, 학생 교육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개정하는 경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A 관할 교육지원청의 개정 권고 대상이 된 해당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에 따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의 개정 권고 대상이 된 해당 학생생활규정은 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개정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교육지원청의 개정 권고의 내용이 단순한 자구와 기구 명칭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거나 상위 법령, 조례, 교육청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4.

학교가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퇴학'이라는 징계 내용이 학생생활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조항이 학생생활규정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삭제하기 위해 꼭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건가요?

A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초등교육이나 특수교육 등 의무교육과정에서는 학생에 대한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퇴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정 후에는 이러한 내용을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Q5.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을 위한 학생·학부모(보호자)의 의견수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설문조사, 스티커붙이기,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의견은 학생자치활동(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등),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학교 우체통, 학교신문고, 학생 인권동아리 활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보호자) 의견은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설문 조사, 인터넷 조사), 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통하여 수렴할 수 있습니다.

Q6.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A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 이라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Q7.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

여러 경로를 통해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도록 합니다.

- 학교 홈페이지, 학생자치회 홍보 게시판, 가정통신문,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학교 교육공동체 및 대외에 알립니다.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알리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 제출서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구 대조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확인 체크리스트이며 제출처는 관할 교육지원청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서입니다. 제출방법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상위법 반영으로 인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Q9.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원칙 규정의 차별 사유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학교구성원 의견이 있을 경우 개정절차를 추진해도 되나요?

A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를 지켜 차별 사유 예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 있는 차별 사유를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관련 당사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이 될 여지가 있어 충분한 규정의 취지 설명 및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규칙으로써 차별금지 원칙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의 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 차별금지 원칙은 인권의 핵심 원칙이며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인간이라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 괴롭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규칙에 이를 규정함은 상위법령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정당성을 갖고 있고, 사회적 약자 일지라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Q10.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꼭 해야 하나요?

A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제2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전문가 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변호사, 교육 및 인권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Q11.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A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단위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해당교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2장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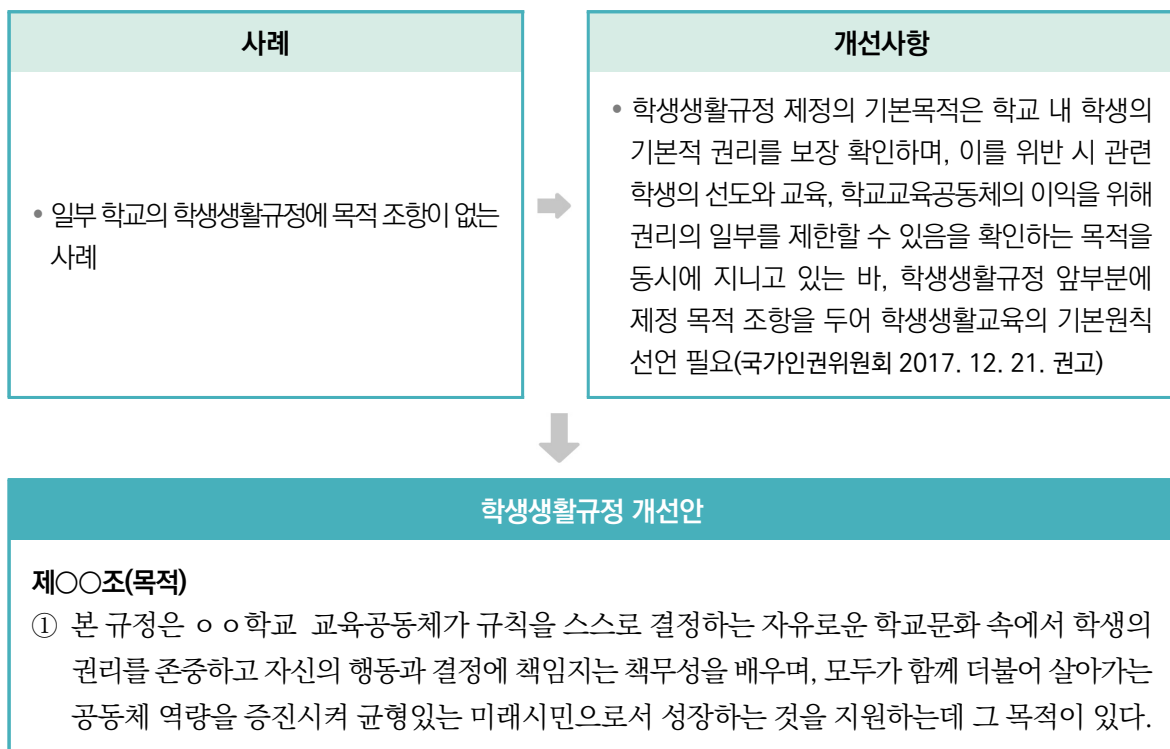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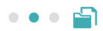
1. 학생생활규정 목적의 명시
2. 학교구성원의 책무 명시
3. 불명확한 조항의 삭제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5. 표현의 자유
6. 교복 및 복장
7. 두발 및 용모
8. 소지품 검사
9.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10. 정보에 관한 권리
11.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12. 학생자치활동
13. 학생의 참정권 보장
14. 학생의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5. 학습권 보호
16. 학생인권 침해 행위와 보호 관련 Q&A 모음

학생생활규정 개선안(예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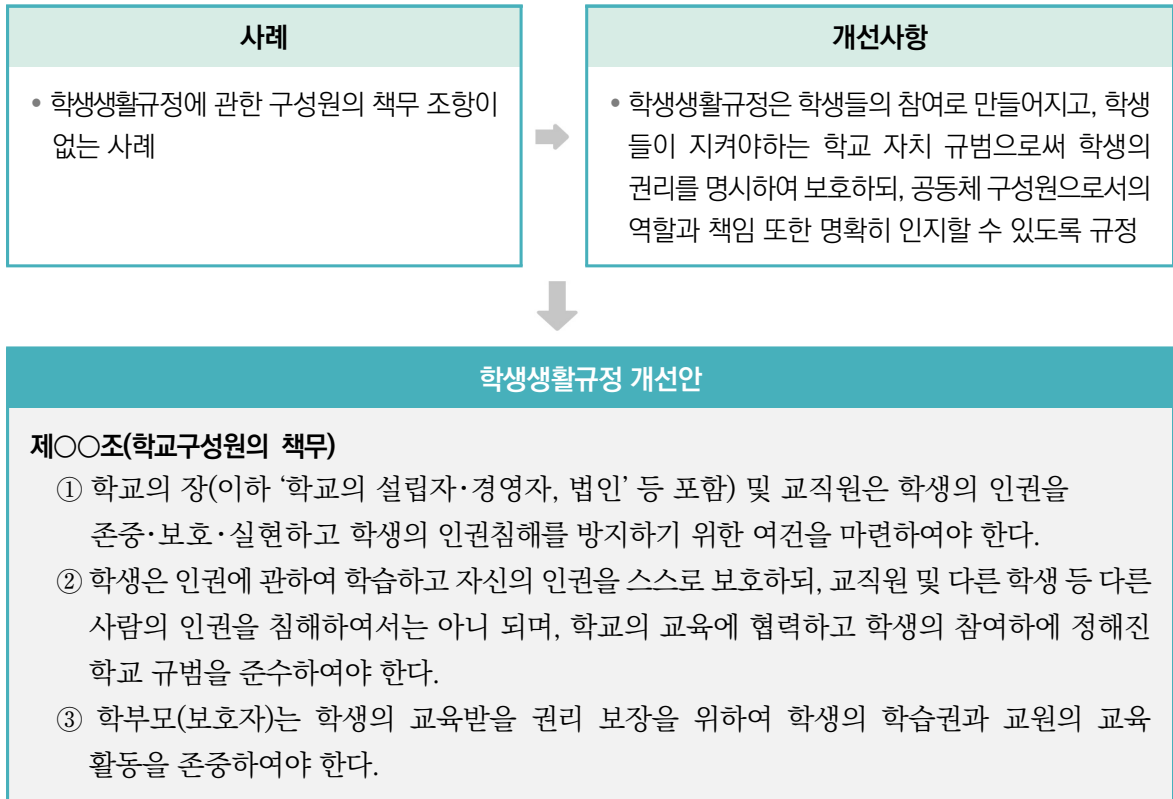
※ 본 개선안은 권장사항이며, 개선안에 대한 의의, 관련 근거, 기본 방침 및 유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각 학교 필요에 따라 변경 및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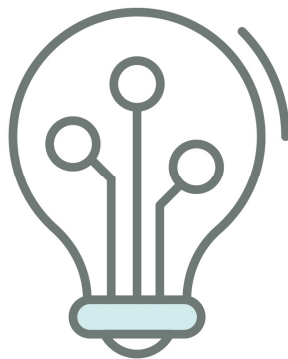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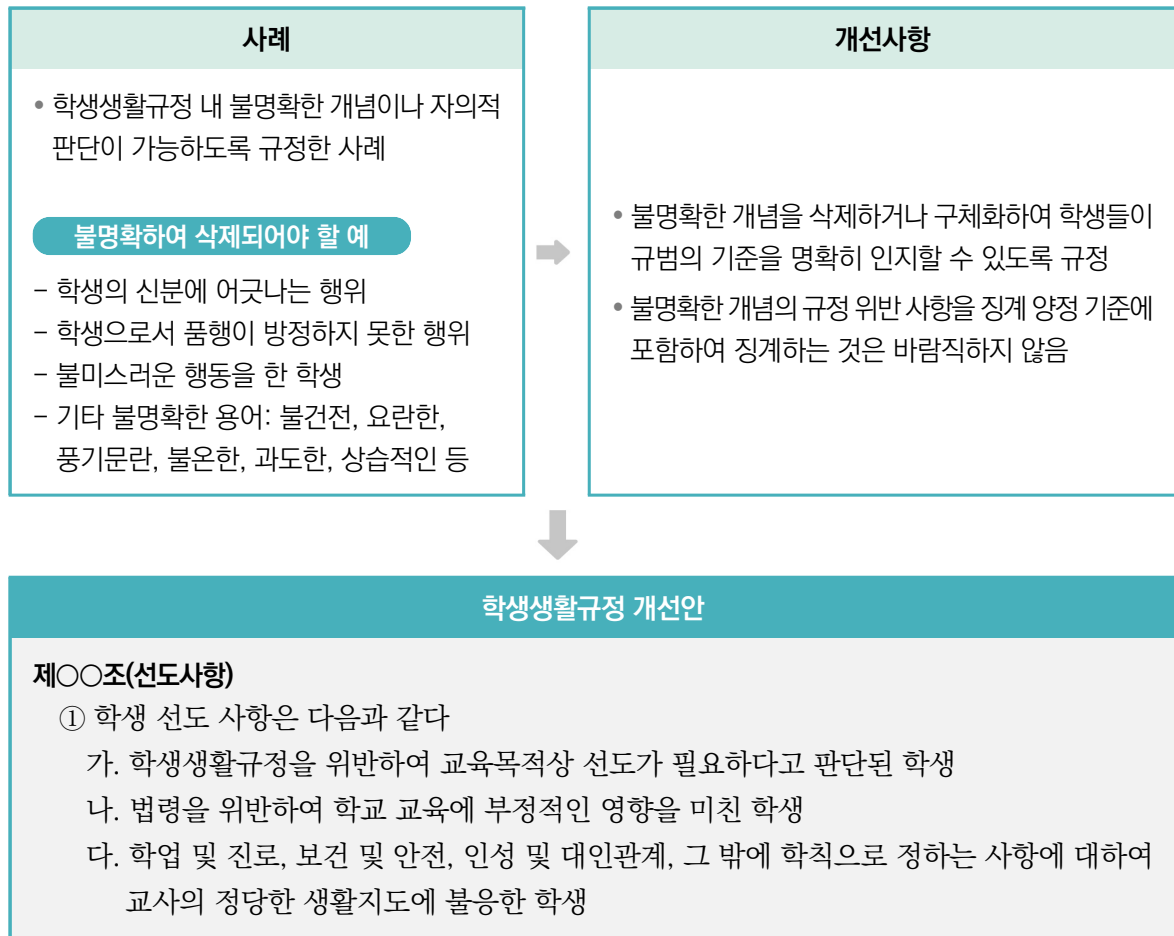
학생생활규정 목적의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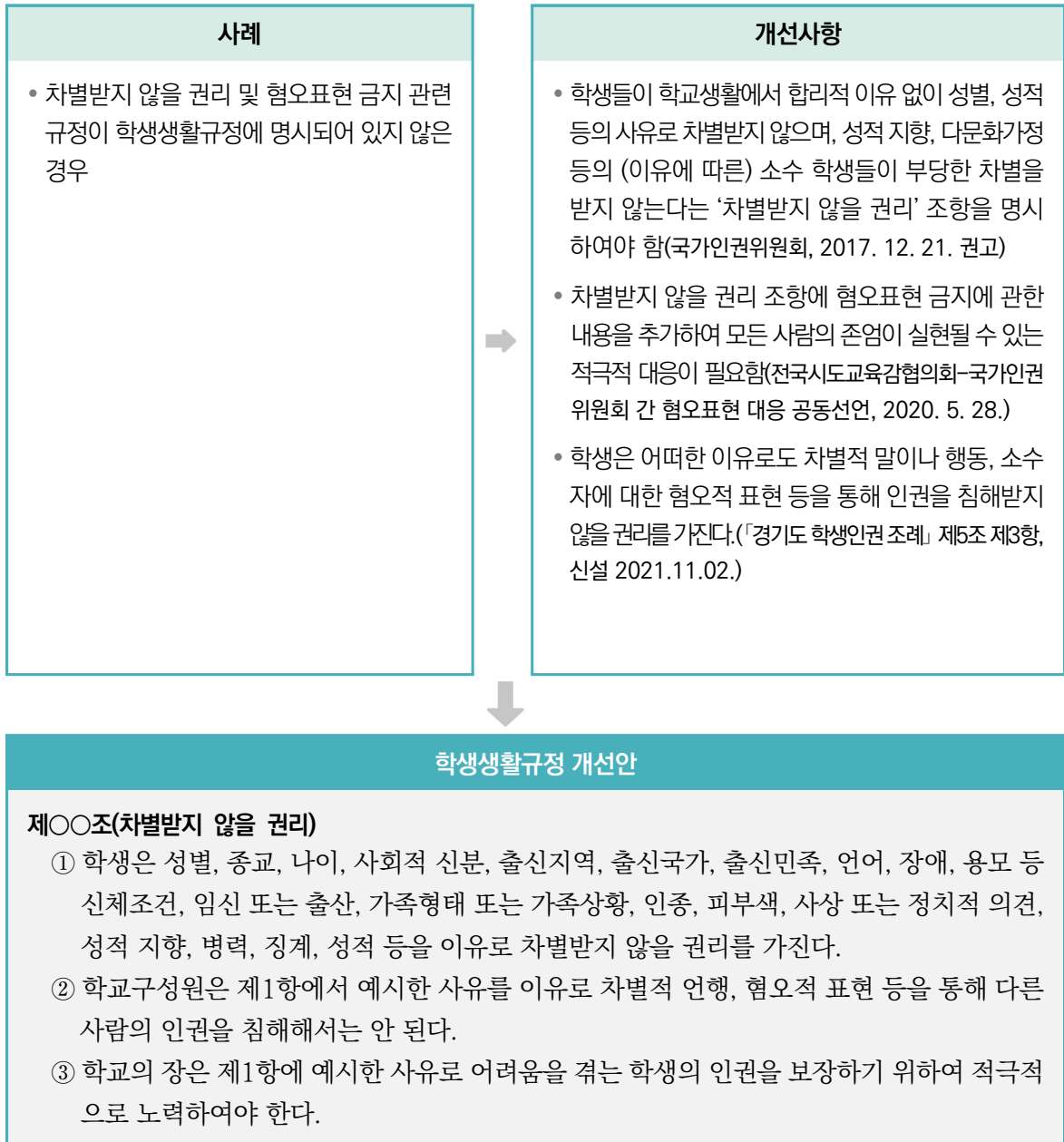
2 학교구성원의 책무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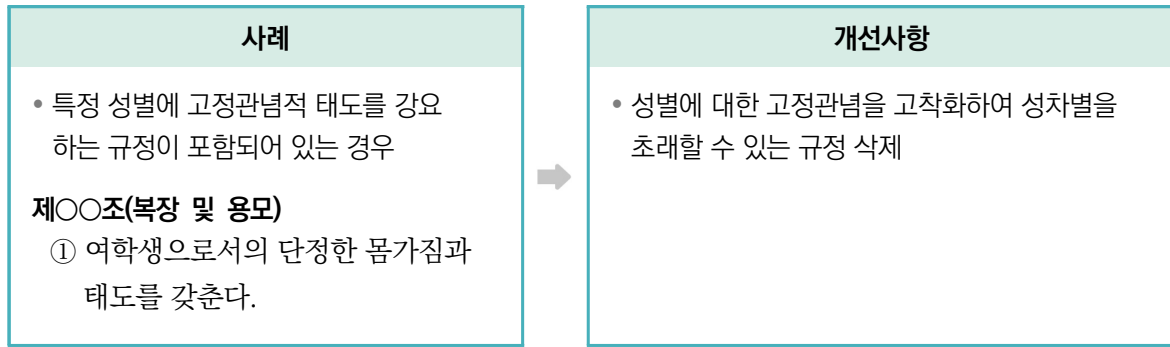


3 불명확한 조항의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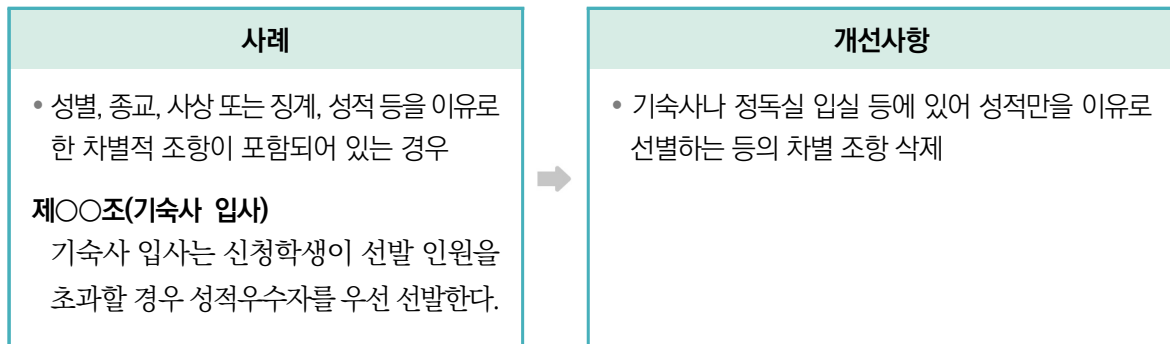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6. 교복 및 복장 개선안 참조(33쪽)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p>제〇〇조(기숙사 입사) 기숙사 입사는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2. 원거리 통학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〇〇시 이외인 학생 나.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먼 학생 3. 성적 향상·우수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 학기대비 성적이 〇% 향상된 자 나. 성적 상위 〇〇% 자
<p>제〇〇조(정독실 입실) 정독실 입실은 매월 신청 순서대로 선발한다. 다만, 전월 정독실 이용 태도 등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입실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p>

5 표현의 자유



사례

-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내용이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학교장 허가사항으로 제한하거나 학교 밖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OO고 제한 예

제OO조(기타 교내생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표현물의 배포행위 등은 금지한다.
- 학생이 대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학교장(담임교사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선사항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따른 대자보 게시, 언론활동 등을 학교장(담임교사 등)의 허가사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 필요
- 정당한 이유 없이 배포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배포행위 자체를 이유로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의 삭제 필요(국가인권위원회 2016. 9. 29. 결정 참고)
 - 단, 배포된 자료의 내용이 타인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선도 가능
-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 등을 별도로 지정·운영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운영 필요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제OO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회할 것을 안내한 후 철회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회할 수 있다.

6 교복 및 복장

사례

- 학생 개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방한용 외투 착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를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징계규정을 운영하는 사례
-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사례
- 성별을 구분하는 디자인을 강조하는 등 불편한 교복형태를 규정한 사례
- 교복 외 겹옷, 티셔츠, 양말, 신발 등의 색깔이나 형태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OO중 제한 예

제OO조(복장)

- ① 교내에서는 교복 위에 외투를 착용하지 않는다.
- ② 부득이하게 여학생이 바지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와 담임교사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내 심의를 거쳐 착용할 수 있다.
- ③ 동절기에는 검정색, 녹색, 남색, 진베이지 계열 오버코트를 착용할 수 있다.
- ④ 코트의 길이는 무릎 위로 정한다.
- ⑤ 동복 착용 시 검정색, 흰색의 목 폴라티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선사항

- 교복 등 학생 복장은 학교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되, 학생의 개성실현권과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편안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필요
- 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시기, 교복 외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등에 대해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7207, 2018. 11. 27.)
- 학생의 바지구매와 착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교복 치마와 바지 중 어느 것을 구입할 것인지 또는 모두 구입 후 어느 것을 입을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필요
- 교복 외 복장의 형태, 색깔, 길이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은 개정 필요
- 학생들의 복장을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국가인권위원회 2021. 9. 3.)
-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교복과 동일하게 외부인과의 식별이 가능하고 생활지도에 어려움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복장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국가인권위원회 2022. 11. 8.)

※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 방안」

- 학생 성장, 교복 손상·마모 등에 따른 학생 불편 해소 및 추가구매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복외 복장 허용에 대한 조항을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칙에 포함하여 운영 가능
-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는 학생의 복장을 학칙에 규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다는 조항을 학칙에 명시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제○○조(교복 및 복장 등)

- ①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 생활복으로 구분하여 단정하게 입는다.
- ② 교복(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과 건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학생은 패딩이나 코트 등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 ④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⑤ 학생은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여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제○○조(편안한 교복과 복장)

- ① 학생은 학습 등에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생활복·반바지·후드티·티셔츠 등) 범위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는다.
- ② 동절기 교복 위 외투를 입을 때 불편한 경우 교복재킷을 벗고 입을 수 있다.

제○○조(자율복 착용)

- ① 학생의 복장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착용한다.

제○○조(편안한 교복과 복장)

- ① 학생의 교복은 학교에서 정한 편한 교복으로 하되, 학생의 성장 및 교복의 마모로 인한 추가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복과 유사한 색상과 형태의 복장을 허용하는 세부기준을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다.

※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명시한다.

사례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형 명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p>○○고 제한 예</p> <p>제○○조(명찰) 명찰은 겉옷의 왼쪽 주머니 위쪽에 이름이 잘 보이도록 박음질하여 부착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형(또는 박음질형) 명찰은 학교 밖에서까지 성명이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탈부착형이나 호주머니형으로 전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2017.12.21. 결정)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제○○조(명찰)

- ① 교복의 교표는 소정의 위치에 부착하고, 명찰은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 ② 생활복, 체육복 등에 명찰을 사용하고, 학교 밖에서 입는 것이 허용된 경우에도 호주머니형이나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7

두발 및 용모

사례

-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사례
- 두발의 형태와 모양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 성별에 따라 머리 모양에 대한 규제 정도를 달리 규정하는 사례

OO중 제한 예

제〇〇조(두발 등)

- ① 머리모양은 학생의 신분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펌, 염색, 헤어제품(무스, 스프레이, 왁스, 젤 등)의 사용 등을 통한 머리 모양변형을 모두 금지한다.
- ③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는 정도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는다.
- ④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하되 뒷머리가 층이 나지 않게 하고, 옷깃에 닿을 경우 묶도록 한다.

개선사항

- 학생의 두발 길이 제한 금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제2항)
- 성별을 구분지어 두발 모양을 달리 제한하는 규정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로 삭제
- 파마나 염색을 획일적·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9. 4. 29.)
-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형태에 대해 획일적·통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설사 교육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 파마·염색·과도한 머리모양의 변형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 학생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학생들의 두발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국가인권위원회 2021. 9. 3.)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제〇〇조(두발)

- ① 학생의 두발 길이는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파마나 염색, 기타 머리 모양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명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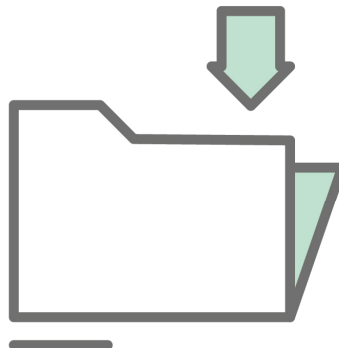
사례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화장 등 용모에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제한하는 경우 • 화장이나 액세서리 등에 관하여 일방적인 금지를 규정한 사례 <p>OO고 제한 예</p> <p>제〇〇조(화장 등)</p> <p>① 용모는 항상 단정하게 유지하되, 학생의 신분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p> <p>② 얼굴 화장은 모두 금한다.</p> <p>③ 립스틱·틴트 바르기, 속눈썹 붙이기, 눈썹 그리기, 눈썹 펴, 손톱 매니큐어 등은 모두 금지한다.</p> <p>④ 액세서리(귀걸이, 팔찌, 반지, 목걸이 등)의 착용을 모두 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용모 관련 규정은 학교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 필요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용모 제한 규정 제정·개정 • 학생들의 두발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 (국가인권위원회 2021. 9. 3.)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제〇〇조(화장 및 용모)

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명시한다.



8 소지품 검사

사례

- 소지품 검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사례
- 학교장이나 교사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소지품 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
- 교사 외의 자(학생)가 소지품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

OO중 규정 예

제○○조(소지품 검사)

- ① 학교장이나 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 시 학급반장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개선사항

- 소지금지물품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일괄적, 강압적 소지품 검사 금지(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1. 결정)
- 소지품 검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학생의 소지금지 물품,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자세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각 학교에서 정하도록 함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제○○조(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조(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 ①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②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④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조(물건의 수거)

- ①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 ②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9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례

-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 직후 일괄 수거하여 사실상 사용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

OO초등학교 규정 예

제〇〇조(정보·통신기기 관리)

- ② 본교에서는 휴대용 통신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휴대용 통신기기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지할 경우, 학부모(보호자)님이 사용규정에 동의하고,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소지할 수 있다.

OO중학교 규정 예

제〇〇조(휴대전화 관리)

- ① 휴대 전화기는 등교 후 바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수업이 끝나고 종례 후에 돌려받는다.

개선사항

- 휴대전화의 학생 자율관리 원칙 준수
-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는 수업 중 사용 제한 원칙(「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 교육활동 중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최소 범위 내 제한(쉬는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다른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 수업 중 무단 사용 등 관련 규칙 위반 학생에 대해 주의, 물품 분리보관 등 제재 규정 마련 가능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제〇〇조(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 ① 학생은 수업 중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⑤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 ① 학생은 수업 중 및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에 스마트기기를 무음 또는 비행기모드로 전환하여 개별 보관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쉬는시간, 점심시간 중에는 교사의 사전 허락을 받은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 상황 대응(보호자 연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및 자습실 등 학습 공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⑥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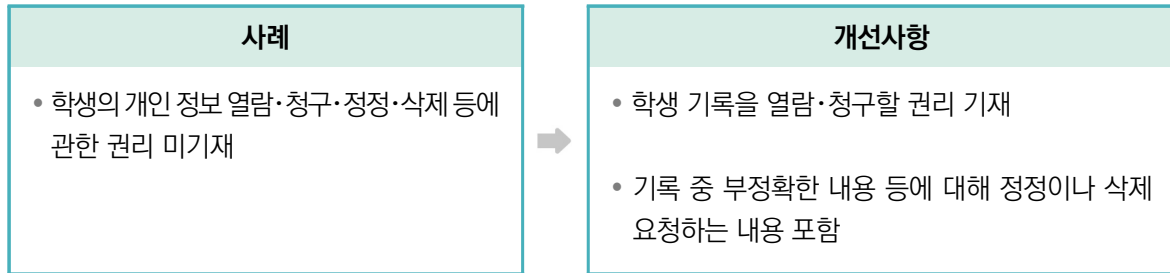
- ① 학생은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스마트기기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비행기모드로 비활성화 상태로 가방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학생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가방에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형 전파차단 파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쉬는시간, 점심시간 중에는 교사의 사전 허락을 받은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 상황 대응(보호자 연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⑦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경우 학급 내(또는 교무실 내, 복도에 설치된 등)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단체용 전파차단 파우치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쉬는시간, 점심시간 중에는 교사의 사전 허락을 받은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 상황 대응(보호자 연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⑤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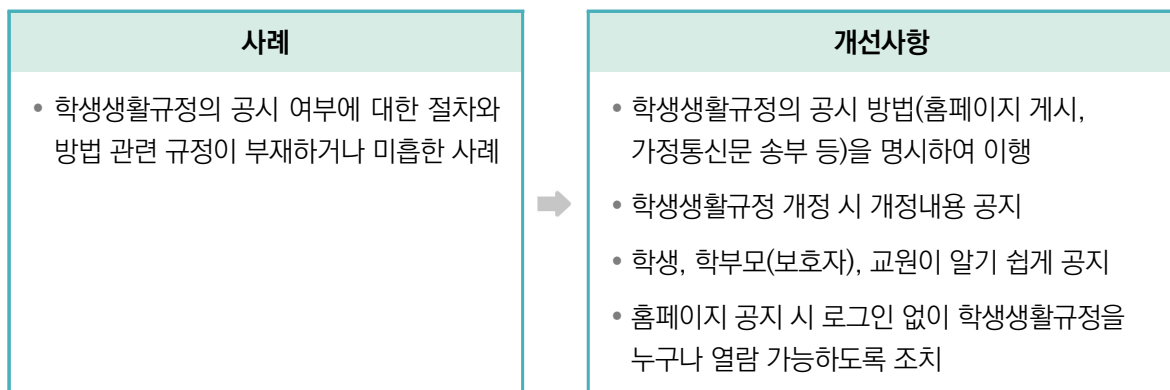
10 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제〇〇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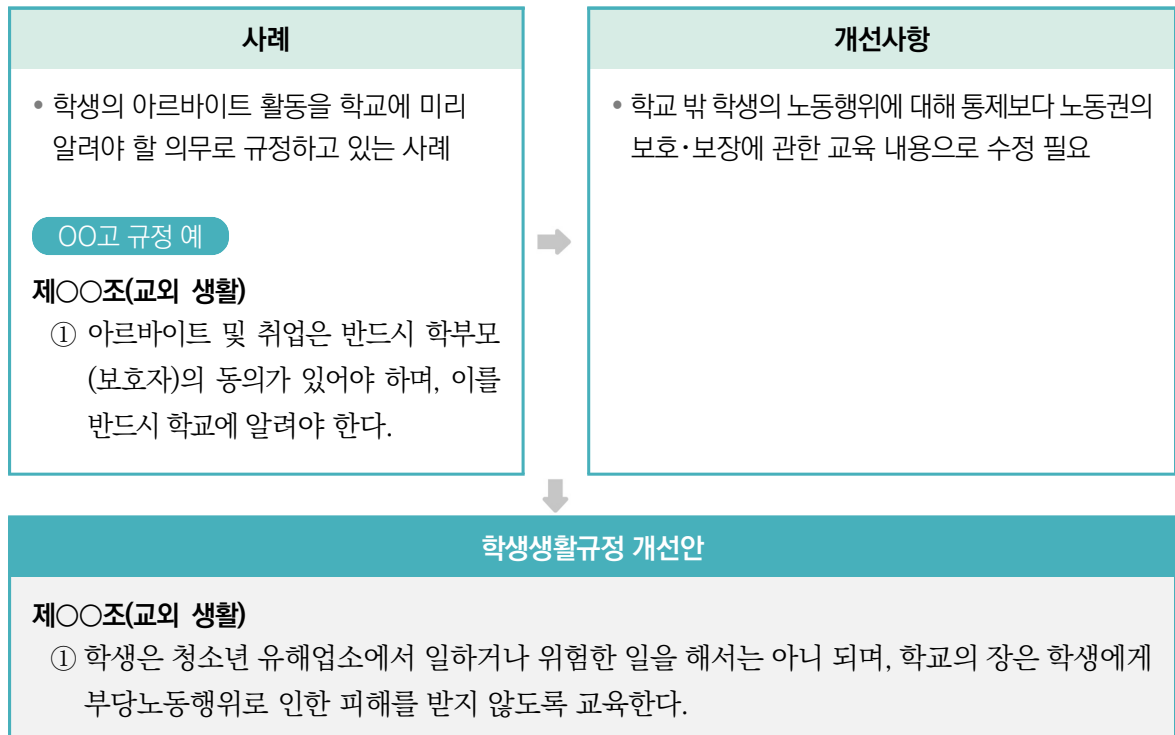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제〇〇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생활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〇〇 게시판에 공지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이 제정·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〇〇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1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12 학생자치활동

사례

-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 보장 미흡
 - 독립적 자치활동 제한 규정 존재
 - 예산 지원 미흡이나 사용의 독립성 미흡
 - 학생의 의견제출권 보장 미흡
- 학생자치회 후보자 자격요건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경우

OO고 규정 예

제OO조(학생회의 소집)

- ① 학생회장은 학생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사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OO조(자격 제한) 학급자치회 임원의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교권침해 포함)으로 징계 및 조치를 받은 자

개선사항

- 학생자치 기구의 구성과 운영,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과 예산의 확보, 운영위원회 등 학교 정책-결정에의 참여권 확대 필요
- 학생자치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보장
- 학생대표 선거와 임명 등에서 공정성 강화
- 학교장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7조)
-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여부 정비
 -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가 필요할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정에 반영하여 실시(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규정, 학생(급)자치회규정 등)

※ 2026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계획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2026. 1. 20.)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제OO조(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 하여야 한다.
- ⑥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3. 지역교육보호위원회에서 (예: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한 사항은 「2026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계획」 학생자치활동 관련 규정(예시)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13

학생의 참정권 보장



사례

-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가입하는 경우 이를 징계하는 등 학생의 참정권을 전면 부정하는 사례

OO고 규정 예

제○○조(교외생활)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조(징계)

규정 위반 내용	선도기준				
	학교 내외 봉사	사 회 봉 사	특 별 교 육	출 석 정 지	퇴 학 처 분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	○	○	○	○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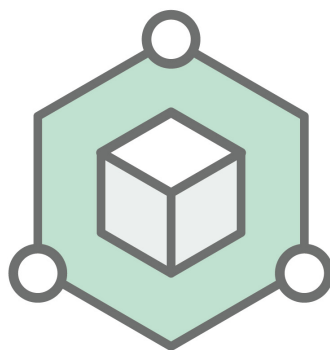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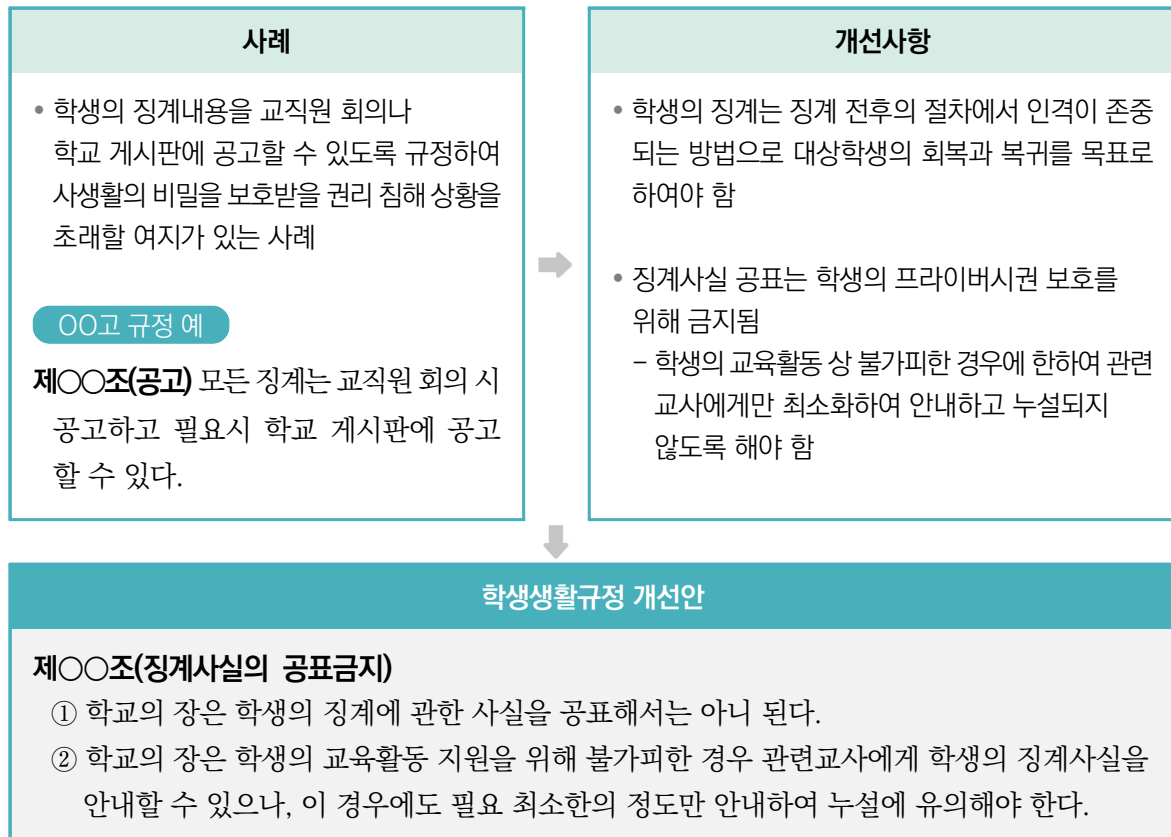
-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18세 이상 학생에게 선거권 보장
- 「정당법」에 따라 16세 이상 학생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학칙은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므로 삭제
- 학생의 참정권은 「대한민국헌법」,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보장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021.11.2. 일부 개정)
-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함에 유의하고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이 사회적인 사안·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토론하도록 교육·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학생 인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제○○조(학생의 참정권 보장)

- ①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4 학생의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사례

- 징계 처분 기준 중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사례

OO고 규정 예

제OO조(징계)

규정 위반 내용	선도기준				
	학교 내의 봉사	사 회 봉 사	특 별 교 육	출 석 정 지	퇴 학 처 분
가중행위					
- 동일 학년에서 학교 내의 봉사를 받은 학생은 사회봉사 조치		○	○		
- 동일 학년에서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 조치			○	○	

개선사항

-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생의 징계는 심각성, 지속성,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적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학교 규칙으로 필수적 가중을 하도록 하는 조항은 학생이 처한 상황과 개전의 기회 부여라는 목적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함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 해당 규정 삭제



15 학습권 보호

사례

- 임신·출산·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 규정이 있는 경우

OO고 규정 예

제OO조(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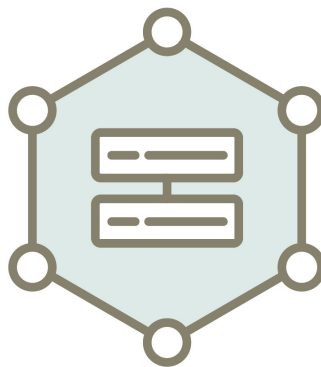
규정 위반 내용	선도기준				
	학교 내의 봉사	사 회 봉 사	특 별 교 육	출 석 정 지	퇴 학 처 분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교육적·사회적으로 물의를 되었다고 인정된 학생	○	○	○	○	○

개선사항

- 임신·출산·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교규칙 개정 권고(교육부, 2013)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 제1항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제5조 제2항은 임신 및 출산을 사유로 한 휴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학생생활규정 개선안

- 해당규정 삭제



부록 학생생활규정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사항에 “아니다”로 체크되는 경우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참고사항〉

- 점검 결과 ‘아니다’로 체크가 된 규정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검토하도록 한다.
- 학교급을 고려하여 해당 점검 사항에 대해 점검하도록 한다.

연 번	점검 영역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그 렇 다	아 니 다	비 고
1	목적	학생생활규정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가?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학생의 선도과 교육, 학교교육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바, 학생생활규정 앞부분에 제정 목적 조항을 두어 학생인권 보장의 기본원칙 선언 필요			
2	구성원 의무	학생의 학교교육활동 협력 및 학교규범 준수 의무 조항이 있는가?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스스로 준수해야함을 명시			
3	불명확한 조항	불명확한 조항은 없는가?	불명확한 개념은 삭제하거나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규범의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예시: 학생답지 못한 복장,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행위,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학생 등)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의 명시 필요			
5	차별받지 않을 권리	혐오표현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 혐오표현 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모든 사람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명시 필요			
6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차별적 규정은 없는가?	특정 성별에 고정관념적 태도를 강요하는 규정 삭제(예시: 여학생으로서 단정한 몸가짐을 한다.)			
7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숙사나 정독실 입실 등에 있어 성적만을 이유로 선발하는 등의 차별 조항은 없는가?	기숙사나 정독실 입실 등에 있어 성적만을 이유로 선발하는 등의 차별 조항이 있는지 여부			
8	학습에 관한 권리	임신·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규정이 없는가?	임신·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규정 여부(예시: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문란 시 퇴학 가능, 이성 교제로 인해 학교의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이성 간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 등)			
9	표현의 자유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가?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10	표현의 자유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 관련 규정이 있는가?	학생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게시 방법, 장소,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연 번	점검 영역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그 렇 다	아 니 다	비 고
11	표현의 자유	표현물 배포 시 학교장 허가 사항으로 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가?	학생 게시물의 내용을 사전 학교장 허가사항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12	교복 및 복장	여학생의 바지 구매와 착용에 대한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는가?	여학생의 교복 바지 착용분 아니라 구매 선택권도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13	교복 및 복장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교복(춘추복, 하복, 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	교복 및 복장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 여부			
15	교복 및 복장	명찰 사용 시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가?	고정형(또는 박음질형) 명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의 우려가 있어 탈부착형(또는 호주머니형)으로 전환 필요			
16	두발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거나 형태와 모양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가?	학생의 두발 길이 제한 규정 및 두발의 획일적·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17	두발	성별에 따라 머리 모양에 대한 규제를 달리하는 규정은 없는가?	성별을 구분지어 두발 모양을 달리 제한하는 규정 삭제			
18	용모	학생의 화장 등 용모에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제한하는 규정이나 화장액세서리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없는가?	학생의 용모 관련 규정은 학교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였는지 여부			
19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 시의 요건과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소지품 검사에 관한 요건과 방법, 절차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20	소지품 검사	학교장이나 교사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소지품 검사 절차 규정은 없는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강압적 소지품 검사 규정은 삭제			
21	소지품 검사	교사 외의 자(학생)가 소지품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가?	소지품 검사는 교사가 실시하며, 교사 외의 자(학생)가 교사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규정은 삭제			
22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학교 내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소지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규정)은 없는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학교 내 반입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학생 자율 관리 원칙을 준수하되, 수업 및 교육활동 중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최소 범위 내로 제한			
23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위반 시 장기간 보관 규정은 없는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학교가 상당 기간(1일 이상 등) 강제 보관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필요			
24	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 개인 정보 열람 및 정정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가?	학생이 본인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정정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25	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생활규정 공시 여부에 대한 절차와 방법 관련 규정이 있는가?	학생생활규정의 공시 방법을 명시하여 이행하고 제정·개정 시 개정내용을 공지하고 있는지 여부			

연 번	점검 영역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그 렇 다	아 니 다	비 고
26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학생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학교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는가?	학교 밖 학생의 노동행위에 대한 통제보다 노동권 보호· 보장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수정 (단, 법에서 학교장 의견서를 요하는 경우는 제외)			
27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과 예산의 확보, 운영위원회 등 학교 정책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 보장 및 학교 정책결정 참여에 관한 규정 여부 학교 운영이나 결정과정에 학생회가 참여할 수 없거나 학생회 소집 보고 등 독립적 자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검토			
28	자치활동의 권리	후보자 자격요건에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가?	징계 여부, 성적, 품행 등의 이유로 학생회 임원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 검토			
29	학생의 참정권 보장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을 일괄적 으로 제한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이를 징계하는 규정은 없는가?	개정 공직선거법(18세 이상 학생에게 선거권 부여) 및 정당법(16세 이상 학생의 정당가입 가능)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표현과 참여의 자유 보장			
30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징계내용을 교직원 회의나 학교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가?	징계사실 공표는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금지, 관련 규정 삭제			
31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32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적절한가?	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3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구성이 적절한가?	학생의 수가 위원회 구성원의 1/3 이상으로 구성 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34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시 구성원 의견수렴에 관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가?	구성원의 의견수렴 방법 마련 여부(예시: 학생- 학생자치 활동(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등),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학교우체통, 학교신문고, 학생 정책동아리 활동, 토론회 등/ 학부모(보호자)- 학부모회, 가정통신문(설문 조사, 인터넷 조사), 모니터링단 활동 등)			
35	학생생활 교육	학생 지도 및 생활교육 권한 일부를 학생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없는가?	학생생활교육은 교원의 고유 권한(초·중등교육법 제20조2, 같은법 시행령 제40조3)이므로 교원이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학생선도부(바른생활부, 학생인성부 등)나 학급대표 학생들이 교원을 대신하여 학생 생활교육을 진행하거나 보조하는 규정은 삭제			
36	학생생활 교육	‘학생선도부’, ‘바른생활부’라는 명칭은 규정에 없는가?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선도부’, ‘바른생활부’ 등은 폐지			
37	학생생활 교육	상·벌점제, 유사 상·벌점제(벌점 누적 등을 이유로 한 학생 징계 등) 관련 규정은 없는가?	상·벌점제 관련 규정이 있을 시 삭제(2014. 9. 1.부터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제) 운영 전면 폐지, 경기도교육청) 문제행동에 대한 단순 기계식 점수 부여 방식은 지양 하고 긍정적 행동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수단 활용			
38	학생생활 교육	학생생활규정 중 학교폭력 및 교 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한 규정은 없는가?	학생생활규정 상의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규정 폐지(학교폭력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에서 처리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 에서 처리하는 등 관련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선도기준표도 확인 필요			

연 번	점검 영역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그 렇 다	아 니 다	비 고
39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는가?	학생선도위원회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 변경 하 였는지 여부			
40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학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학년별, 반별 등(예: 1학년 생활 교육위원회, 2학년 생활교육위원회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 개정 필요,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등 관리의 사항은 객관성·공정성·투명성, 조치결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단일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학교 실정에 따라 기구의 명칭은 달리할 수 있음)			
41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징계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지침 상한선을 지키고 있는가?	징계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상한선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학교내의 봉사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사회봉사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특별교육 이수 총 30시간 이내/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42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선도기준에 '전학' 항목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제5호 이외의 기준은 없는가?	학생에 대한 선도기준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제1항 제1호~제5호 이외의 기준을 두고 있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제1항 제1호 학교내의 봉사, 제2호 사회봉사, 제3호 특별교육이수, 제4호 출석 정지, 제5호 퇴학)			
43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일시, 장소, 개최이유)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일시, 장소, 개최이유)를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44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의견 제출 절 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45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46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는지 여부			
47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교 내 재심의 신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 및 청구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학교 내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 및 청구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48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교내 재심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학교내 재심의 운영 및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49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퇴학 학생에 대한 「가정학습」 조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가? (고등학교만 해당)	퇴학 조치를 하기 전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한 가정학습과 기간(10일 이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50	학생생활 지도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이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가?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범위, 방법 및 방식이 학교규칙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51	학생생활 지도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이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가?	고시 제19조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시간, 학습 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물품 분리 보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여부			

16 학생인권 침해 행위와 보호 관련 Q&A 모음



Q1.

학생이 특정 인종의 용모를 희화화하여 모방한 것에 대해 차별을 의도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경우 학교의 역할은?

A

인종, 장애, 성별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무능력하고 우스운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경우엔 혐오표현일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혐오표현은 차별할 의도가 없었고 장난이나 농담이었다 해도 그 언행으로 해당 소수자적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해당 소수자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사회를 이루도록 하고,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Q2.

학생면담, 생활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가정환경 조사서를 통해 학생의 가정형편, 학부모(보호자) 직업, 부모의 이혼 여부 등을 조사해도 되나요?

A

학부모(보호자)의 직업, 학력, 가정형편(기초생활수급대상 등), 부모의 이혼 여부 등을 묻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목적의 용도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관련)
- 학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로 수집·이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가정형편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선택권, 편견 등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Q3.

체벌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걸음, 기마자세,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벌세우기도 체벌에 해당되는 건가요?

A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는 체벌에 해당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3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직접 학생을 체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생의 신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경우 역시 체벌입니다.
- 따라서 오리걸음, 기마자세 벌서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학생의 신체에 부당하게 고통을 가하는 것 역시 「초·중등교육법」이 금지하는 체벌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고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Q4. 학생에 대한 욕설, 비방 및 부모님 비하 발언 등도 인권 침해나 아동학대에 해당되나요?

A 학생에 대한 모욕·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모두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되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상 신고 대상 및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뿐 만 아니라, 발언의 내용이 진실이며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거나 가치중립적 표현인 경우(비밀스러운 병력 무단 공개 등)에도 학생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아동학대범죄 및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5.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선도 대상 학생의 의견 진술을 받으려 했지만, 학생이 휴식권을 주장하며 쉬는 시간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A 수업이 끝나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일정 기한을 주고 자기변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학생이 휴식권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면, 정규 수업이 끝나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일정 기한을 정하여 주고 기한 내 관련 사안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자기변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학생이 자기 변론서를 작성할 때는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작성하게 하며, 교사가 학생에게 문구를 제시하거나 강압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학생이 기한 내 변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대상 학생의 책임임을 설명하고,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Q6. ‘따뜻한 아침맞이’ 등 등교지도 중 복장 불량 학생을 일괄적으로 검사하고 위반한 학생을 교문이나 현관에 세워두거나 벌을 주는 지도 방식이 문제가 되나요?

A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의 복장을 일괄 검사하거나 교문이나 현관에 세워 두어 다수의 학생들이 이를 알게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교생이 지나가는 교문이나 현관 앞에서 학생 징계를 목적으로 복장 등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적발된 학생을 세워두거나 벌을 주는 행위는 해당 학생에게는 모욕적 조치일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인격권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따뜻한 아침맞이’ 등 등교지도를 할 때에는 본래 취지에 맞는 생활교육만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일기장 검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A** 강압적인 일기장 검사는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기쓰기 등 글쓰기 지도는 가능하지만, 학생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일기장 검사는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글쓰기 지도 방식을 ‘일기장’이 아닌 자유 주제 중심의 ‘글쓰기 장’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일부 학교에서 일기장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에 규칙화 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일기장 지도가 학교차원의 생활교육사항은 아니므로 규칙 규정보다는 개별 지도과정에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8. 학급에서 학생 물품이 도난된 사건이 있어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검사 대상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아 교육목적으로만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도난 물품 방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인격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 소지품 검사는 교육목적상 대상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안전상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Q9. 교원이 도난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동의 없이 교실에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녹화하였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인권 침해 소지가 될 수 있나요?

- A**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교실을 녹화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관제 방식의 CCTV를 교실 내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며, 학생의 동의 없이 교사 개인이나 학교 카메라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교실 내 화상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적 목적이라고 하여도, 학생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장비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생활을 촬영하고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교육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Q10. 흡연 의심학생에 대하여 담배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A**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 검사를 강행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에 대한 학부모(보호자) 통지 등의 교육조치를 진행하고, 거부행위에 대해 별도의 선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거부행위를 이유로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의견을 기재 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의견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진술 거부’ 또는 ‘의견 없음’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Q11. 흡연한 학생에게 ‘절대금연’이라고 적힌 빨간 조끼를 입고 교문 앞에 서 있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 A**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은 지도방법은 학생에게 학생의 수치심을 유발하여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12. 문제행위를 한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해도 인권침해인가요?

- A** 의사에 반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됩니다.
- 생활교육의 방편으로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성찰하는 글쓰기를 쓰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쓰도록 강제하거나 잘못을 시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13. 감지(뽁뽁이)를 쓰도록 지시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 A** 교육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감지(뽁뽁이)쓰기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생생활교육의 방편으로 명심보감이나 명언집을 보고 감상문을 작성하거나 성찰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학생의 연령이나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10개 명언 문장을 20번씩 쓰기’, ‘명심보감을 A3 용지 앞뒤로 빈틈없이 뽁뽁하게 쓰기’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사실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가혹행위에 해당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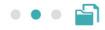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요약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3.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학교용 예시)
4. 고시 관련 서식
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Q&A 모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요약



구분		내용
용어 정의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법에 따른 사람 - 교육활동: 학교안전법(등하교시간 - 학교교육과정 운영시간 - 체험학습 등 귀가길) -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과정 학생 일상적인 생활 전반 지도행위 - 개별학생교육지원: 학생이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일시 분리되었을 때 제공하는 상담 또는 학습지원
	교육 3주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칙준수, 교원생활지도 준중 - 학교의 장, 교원: 학내질서유지노력,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학교장: 학생, 교원, 보호자의 상호소통 증진 노력, 개별학생교육지원 예산, 공간·인력 확보 등 지원 - 보호자: 학교의 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 준중, 학생학칙 준수 지도, 원활한 교육활동 진행 협력
생활 지도 분야 및 범위	학업 및 진로	교원수업권·학생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면학분위기 영향 물품 소지 및 사용, 진로진학 관련 사항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안전, 위협·위해 행위, 건전한 성장발달 영향 사항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품성·예절, 언어사용 및 의사소통, 학교폭력 예방·대응, 학생 간 갈등 조정·관계 개선
	기타	특수교육대상자·다문화학생 인식·태도, 옹모·복장, 비행·범죄예방,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 그 외 학칙위반사항
구분	개념	방식
생활 지도 방법	조언	말과 글로 정보제공 권고 행위 - 사생활 비공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 권고
	상담	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체 소통 활동 - 문제해결, 원인분석, 대안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3주체 누구나 요청가능 - 수업 외 시간 원칙(진로·상담교사, 보호자·학교장 상담 제외) - 비밀엄수, 사전 예약 및 협의 필수, 상담요청 시 응대 의무(비예약자, 직무 외, 근무시간외 거부 가능, 폭언·협박·폭행 시 중단 가능 및 도움·신고요청 가능(교직원, 주변학생))
	주의	학생 위험 행동, 법령 및 학칙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경고 행위 - 수업 중 스마트기기 및 부적합 물품 사용 제한. 주의, 훈육·훈계, 주의 무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교사 면책
	훈육	지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 - 조언·주의에도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 가능 -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한 과업 부여, 행위 지시 - 법령과 학칙 금지 행동 말로 제지 - 2회 이상 주의를 주어도 스마트기기 계속 사용 시 물품 분리·보관 가능 - 방해 행동 지속 시 보호자 인계 및 가정학습 요청(출석 인정) - 소지품 조사 가능(자신 또는 타인 생명 신체 위해, 재산손해 우려 합리적 이유)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예외: 보조기기, 교육목적, 긴급 상황 대응) - 물품 분리 보관 가능(2회 이상 주의 시, 안전건강 위험 물품, 학생 구매 불가 물품, 학칙 소지 금지 물품) - 물품 분리 보관 시 학교장보고, 보호자 알림 - 담임교사 학급생활규정 운영 가능
	훈계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문제행동 지적, 잘못을 깨닫게 하기 - 조언, 주의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 미인정, 언행 미개선시 실시 - 과제 부여(대안 행동, 성찰문 작성, 시설물품 원상 복구(청소 포함))
	보상	바람직한 행동 장려 목적 유·무형 동기부여 행위 - 칭찬, 상 등
기타사항	특수학생 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 시 교직원 대상 연수, 특수교사 담임 간 협력 노력, 필요시 수업 중 보조기기 활용 허용 - 심각한 특수학생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사항 포함
	불응 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조치 가능 - 지속적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가능
	이의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제기 가능(14일 이내 제기) - 학교장 답변 의무(14일 이내) - 동일한 내용 2회 이상 답변 시 답변 거부 가능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3. 1.] [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 2.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1. “개별학생교육지원”이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삭제)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⑥ 교원은 제5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⑦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16조(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개별학생교육지원) ①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②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20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키한은 202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6-3호, 2026.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고시 제8조제5호, 제12조제5항, 제18조, 제19조 및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3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학교용 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전 내용(명칭, 목적)은 단위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맞출 것

제3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제40조의3제3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6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7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 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 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증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증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 ⑦ 교원은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⑧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 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예시)]

※ 교육부 고시 제12조(훈육)제5항제1호~제5호에 의한 학칙 규정 예시이므로,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2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문자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물품 분리·보관 후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그리고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12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증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4조【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사항】

본 특례 운영 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른다.

제17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학년연구실, 상담실, 민원면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 ②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 ⑥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예시1: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제18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 ① 학생은 수업 중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⑤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예시2: 개별 소지 가능, 수업 중 및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시 사용 불가]**제18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 ① 학생은 수업 중 및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에 스마트기기를 무음 또는 비행기모드로 전환하여 개별 보관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쉬는시간, 점심시간 중에는 교사의 사전 허락을 받은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 상황 대응(보호자 연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및 자습실 등 학습 공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⑥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예시3 : 개별 보관,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사용 불가]**제18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 ① 학생은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스마트기기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비행기모드로 비활성화 상태로 가방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학생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가방에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형 전파차단 파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쉬는시간, 점심시간 중에는 교사의 사전 허락을 받은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 상황 대응(보호자 연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⑥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⑦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예시4 : 일괄 수거·보관,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사용 불가]

제18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경우 학급 내(또는 교무실 내, 복도에 설치된 등)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단체용 전파차단 파우치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쉬는시간, 점심시간 중에는 교사의 사전 허락을 받은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 상황 대응(보호자 연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⑤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보관 장소 및 관리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학교배상책임공제로 지원 가능

※ 이후 내용은 ○○○학교 학생생활규정의 현재 조항과 같거나 특례 조항에 의거 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고시 관련 서식



□ 서식 목록

1.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2. 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3. 수업 중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4. 개별학생교육지원 지도 대장
5. 특수교육대상자 OO실 지도 대장
6.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7.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8.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9. 물품 폐기 확인서
10.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1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예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년 / 반		학생성명	
스마트기기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단서 조항 해당 여부	☐ 해당 ☐ 제1호(보조기기) ☐ 제2호(교육 목적) ☐ 제3호(긴급 상황 대응) ☐ 미해당		
사용 목적 및 구체적 사유	(사용 목적)		
	(구체적 사유)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필요시) 증빙 자료	진단서 등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 허가받은 개인용 스마트기기의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스마트기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만성·희귀질환 학생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예시)

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본 사용 신청서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칙과 안전 수칙에 따라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직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년 / 반 / 번			학생성명
보호자	(성명)	(관계)	보호자 연락처
병명			
상세 활용 계획			
기기명(모델명)			
목적 및 방법	혈당 경고 알림 발생 시 확인, 앱을 통한 수치 기록 등		
시간 및 장소	배식 전 및 식후, 일과 중 매 30분간 간격 확인 등		
위급 상황 대처 방안	※ 기기 오작동 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직원 및 학생이 취해야 할 조치		
증빙 자료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수) ☐ 기타()		

본인은 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본 기기는 학교에 제출한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의료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겠습니다.
2. 본 기기는 주의 집중력 향상, 필기, 검색 등 의료 목적 외 개인의 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녹음·촬영 등 의료 목적과 무관한 기능을 사용하거나,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업 및 교내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기 설정(무음·진동, 푸쉬·알림 차단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올바른 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 지도(보호자 내교 상담 등)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본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용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예시)

수업 중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본 사용 신청서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칙과 안전 수칙에 따라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교직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년 / 반 / 번			학생성명	
보호자	(성명)	(관계)	보호자 연락처	
장애 유형				
상세 활용 계획				
기기명(모델명)				
기기 구분	☐ 전용 보조공학기기 (예: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 범용 스마트기기 (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활용 앱/기능			
신청 사유 범용기기 신청 시 필수 기재	※ 전용 기기 대신 범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i>전용 기기에 실시간 음성-자막 앱이 없음. 확대독서기를 특별실로 가져가기 어려움 등</i>			
시간 및 방법	<i>교실에서는 확대독서기를 사용하고, 과학실과 음악실에서는 스마트폰 고대비 확대앱 사용 등</i>			
증빙 자료	☐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필수) ☐ 의사소견서 ☐ 기타()			

본인은 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본 기기는 학교가 허가한 목적과 학생의 장애로 인한 개별적으로 인정된 보조기기 사용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녹음·촬영 등 수업 참여를 돕는 목적과 무관하거나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2. 수업 및 교내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기 설정(무음·진동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3.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추가 지도(보호자 내교 상담 등)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4. 범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기가 분리·보관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 개별학생교육지원 지도 대장(예시)

○○실(일시 분리장소) 개별학생교육지원 지도 대장

〈○○○학교〉

학년도	2026		확인란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내 용	지도 일시	대상학생 (학번, 이름)	지도교사	분리 사유
	4.14.(화) 14:40~15:20	10101 ○○○	○○○	2회 스마트기기 무단 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특이 사항	- 10101 ○○○.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 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서식 5 》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학생교육지원 지도 대장(예시)

특수교육대상자 ○○실(일시 분리장소) 개별학생교육지원 지도 대장

〈○○○학교〉

2026학년도		확인란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지도 일시	대상학생 (학번, 이름)	지도교사	분리 사유
4.14.(화) 14:40~15:20	10101 ○○○	○○○	2회 스마트기기 무단 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조치	1. 심리안정을 위해 감각볼 10분 제공 2. 학습을 위해 수학 과제 제공		
특이사항	1. 심리 안정이 필요하며 시간이 연장되었음을 2교시 교과 담당 교사에게 알림 2. 학습 과제 대신 무선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어 물품을 보관한 후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행동 발생 전 상황	행동 귀를 막고 소리지름 2회 스마트기기 무단사용		행동 발생 후 상황
기타	평상시와 다른 일과 및 주변 상황 등 교사가 생각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가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안 발생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행동중재에 참고한다. 관련 내용은 통상 학교 지도 대장에 포함하여 기록하되, 심리적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서식과 같은 별도 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서식 6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예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님께!

○○○초·중·고등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 과제 실시) 학생이 가정에서 아래의 '가정학습 과제'를 실시하도록 협조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00-000-0000(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 이용)

20 년 ○○월 ○○일
○○○초·중·고등학교장 (직인생략)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다음과 같이 가정학습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년 반 학생 성명:

보호자 인계 일시	가정학습 과제 내용
년 월 일 00:00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예시)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개별학생교육지원실 등에 게시 및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다음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학칙에 따른 스마트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옆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장

서식 8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예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년 월 일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1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경우 •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스마트기기의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5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p>*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습니다.</p> <p>*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p> <p>*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p>					

○○○초·중·고등학교장

서식 9 》 물품 폐기 확인서(예시)

물품 폐기 확인서

학년 / 반	
학생 성명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p>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5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서식10 » 성찰하는 글쓰기 (예시)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Q&A 모음

Q1.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해 설립된 학교도 이번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이 적용되나요?

A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만 적용이 됩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이 고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Q2.

특수교육대상자도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이 적용되나요?

A

- 특수교육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이 고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적용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차별 행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Q3.

전문상담사도 학생생활지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교무를 총괄하므로 학생 분리지도 등에 대한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전문상담사 등 교직원(학교장이 인정한 교육활동 보조 인력 등)에게 분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상담사도 학생생활지도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고시와 학칙에 따라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하였다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 이 고시의 내용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준이며, 고시 및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법령·고시·학칙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고시가 정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는 학칙에 근거하여 생활지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칙을 제정·개정할 때는 이 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고시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일부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고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할 수 있나요?

A

- 학칙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제59조의4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시 해설서의 예시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특히, 법령과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의견수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른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Q6.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 A** ■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 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Q7. 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진로 및 진학 관련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 A** ■ 교원은 학생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하여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은 자신의 개인적 신념, 가치 등이 학생생활지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학생에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Q8.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A** ■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로 발생한 절도,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범법 행위,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품행장애 등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연계하고, 정신 병리적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9. ‘조언’에 해당하는 특정 요건이 있나요?

- A** ■ 조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로 어느 때든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조언은 학생생활지도 중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특정 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교육활동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가장 광범위한 생활지도 방식입니다.

Q10. ‘성장을 이끌어내는 건설적인 조언’이란 무엇인가요?

- A** ■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그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담긴 조언을 의미합니다. 학생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학생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올바른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Q11. ‘조언’은 말과 글로만 해야 하나요?

- A**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생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매체 등의 자료를 함께 활용 할 수 있습니다.

Q12.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에게 권고하였으나 보호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따라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Q13.

상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나요?

A

- 공식 요청에 의한 상담인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의 발달 과정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과의 가벼운 상담인 경우에는 개인 메모 형태로 핵심만 기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14.

상담을 녹음 및 녹화하려는 하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나요?

A

- 상담에 대한 녹화 및 녹음은 상담 시작 전,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녹화와 녹음 실시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를 확보한 후 실시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됨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안전을 위해 상담실 등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영상 녹화는 가능합니다.

Q15.

제10조 제3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

- 형법상 상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담자의 비밀준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상담 내용을 알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Q16.

제10조제6항과 관련하여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은 무엇인가요?

A

- 상담 관련 직무범위는 수업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된 영역 등이 해당됩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은 교사가 관여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급 또는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요구 등이 있습니다.

Q17.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A

- 상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제6항, 제7항과 같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을 때, 직무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근무 시간 외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 보호자의 폭언 등으로 상담이 불가할 때 등이 있습니다.

Q18. 상담을 위한 사전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A** ■ 고시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상담 요청서 작성·제출', '상담 사전 신고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상담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Q19. 정당한 지시와 부당한 지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 형식적으로는 교칙 등에 언급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교사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가 학생의 지적·정리적·행동적 능력을 함양하여 전인적인 인간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20. 학교급별, 학생별 지시는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 A** ■ 학교급별, 학생별로 성장 발달 단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한 최고 전문가는 현장 교사입니다. 개별 교사별로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학년 협의회 또는 전체 교사 협의회를 통해 학년 규정, 학교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21.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의'를 준 후에만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나요?

- A** ■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훈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다만, 상황에 따라 학생이 법령 또는 학칙에서 금지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명 위해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훈육' 및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Q22.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시 스마트기기를 별도 보관하였다가 하교시 되돌려줄 수 있나요?

- A**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칙 개정에 대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3.

교실 내 지정된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다른 학생을 추가로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 학기 초 교실 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공간을 2개 이상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교사의 판단 하에 교실 내 적절한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통상적인 앉자리 배치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에도, 집중을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을 7일 동안 통상적인 자리가 아닌 교탁 옆에 홀로 배치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구분 짓게 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정서적 체벌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학생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19진정0807000 결정>

Q24.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학교 내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바로 인계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학습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즉시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가정학습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학습 상황을 점검하며, 보호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Q25.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 학교의 장은 학교 상황을 고려한 개별학생교육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교육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참여 인력, 업무 분장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은 학교 내 공간 뿐만 아니라 학교 외 공간까지 확장되는만큼 학생의 안전사고 관리 책임 주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6.

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A

-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장소, 시간, 학습지원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7.

개별학생교육지원 등을 위한 대장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A

- 각종 대장 등 문서의 총괄 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다만, 각 문서의 실무적인 관리 주체는 학교에서 정한 업무분장 및 위임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8. 실외 교육활동 중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경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A** ■ 운동장 등 실외 교육활동 시 개별학생교육지원은 교사가 해당 학생을 관찰할 수 있고 학생이 학급의 수업 활동을 모두 볼 수 있는 장소로 일시적으로 분리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의 안전과 위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을 제공해야 함

Q29. 2교시 쉬는 시간에 약 다섯 명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나요?

- A** ■ 흡연 정황이 신고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 화장실을 사용한 학생들이 흡연했을 것으로 의심되므로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 조사가 가능합니다.

Q30. 확인된 물건 중 폭발물, 마약류 등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라면 학교가 보관해야 하나요?

- A** ■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분류되는 물건일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총포화약법 제2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Q31. 가위, 칼과 같은 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고시 제12조 제5항을 근거로 학用品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나요?

- A** ■ 학생이 가위, 칼과 같은 학用品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교원은 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고시 제12조 제5항제2호에 따라 분리보관 할 수 있습니다.

Q32. 고시 제12조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보관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때, 물품의 경중에 따라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만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까요?

- A** ■ 고시 제12조제6항에서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경중에 따라 보고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33.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었을 때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때 학생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4.

교무실, 화장실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교실을 학급 규칙으로 정하여 별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훈계에 포함되나요?

A

- 징벌 목적의 별청소는 훈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과 직접 관련(예: 친구의 음료수를 바닥에 엔지른 경우, 벽에 낙서를 한 경우 등)되어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계 조치로서 청소와 같은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학급 전체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학급 내 환경 정리 등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생활지도 목적의 청소 지시(제12조제2항)는 가능합니다.

Q35.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인권위 권고를 위반하는 사항인데, 훈계 시 학생들에게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나요?

A

-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는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을 훈계할 때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과 성찰문 차이) 반성문은 어떤 행위에 대한 외부적 판단에 근거하여 학생에게 그 판단을 인정하고 맞추도록 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성찰문은 학생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여 돌아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Q36.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지도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고,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색깔 신호, 상황 그림 등을 활용해 학생에게 지도 상황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Q37.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원이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학생이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였는가의 판단은 학생의 특성과 지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도 교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Q38.

이의제기 및 답변 기한인 “14일 이내”에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A

-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민법」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라 14일째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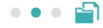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 요약
2. 관련근거
3. 기본방침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흐름도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절차
7. 학교단위 불복 절차: 재심의
8.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
9. 그 밖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0.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별 활용 서식
 - ▶ 「기안문서식 6종 포함」
1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예시
12. 통고제도 개요 및 절차
1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Q&A 모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 요약



번호	구분	내 용										
1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0인으로 구성(단일기구, 소위원회 구성 불가)▶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 위원은 교직원▶ 전문가 위촉 가능(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보호자) 위촉 가능)▶ 간사 운영(간사는 위원 불가, 학년별 간사 운영 가능)										
2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3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 안내는 서면통지가 기본<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 구두, 문자 통보 가능- 통지사실 구체적 기록 및 안내(시간, 장소, 개최이유, 의견 개진 방법 등)▶ 일반 정족수 개의,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 포함해 운영▶ 회의록 기록 보관, 심의결과 내부결재▶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용 노력(학교장이 이유를 첨부하여 재심의 요구 가능)▶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 선도기준표 규정(필수)▶ 조치별 내용(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table><tr><td>학교내의 봉사</td><td>1일 2시간, 5일 이내 기간으로 총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수 재량 운영 가능</td></tr><tr><td>사회봉사</td><td>1일 5시간, 5일 이내 기간으로, 사회봉사기관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수 재량 운영 가능</td></tr><tr><td>특별교육</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수 재량 운영 가능-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지침 준수(1일 6시간 5일 이내 권장)-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내외 프로그램 실시 가능</td></tr><tr><td>출석정지</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미인정결석처리)- 해당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 최소화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 진행</td></tr><tr><td>퇴학 (의무교육 대상자 제외)</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조치 전 10일 이내 가정학습 가능(미인정결석처리)- 가정학습 후 반성 및 선도 가능 시 철회, 취소 가능- 처분 시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 안내※ 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도 후 신중한 결정 필요. (재심 요청 시 징계조정위에서 퇴학 조치 전 학교의 노력에 대해 살펴봄)</td></tr></table>	학교내의 봉사	1일 2시간, 5일 이내 기간으로 총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수 재량 운영 가능	사회봉사	1일 5시간, 5일 이내 기간으로, 사회봉사기관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수 재량 운영 가능	특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수 재량 운영 가능-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지침 준수(1일 6시간 5일 이내 권장)-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내외 프로그램 실시 가능	출석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미인정결석처리)- 해당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 최소화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 진행	퇴학 (의무교육 대상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조치 전 10일 이내 가정학습 가능(미인정결석처리)- 가정학습 후 반성 및 선도 가능 시 철회, 취소 가능- 처분 시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 안내 ※ 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도 후 신중한 결정 필요. (재심 요청 시 징계조정위에서 퇴학 조치 전 학교의 노력에 대해 살펴봄)
학교내의 봉사	1일 2시간, 5일 이내 기간으로 총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수 재량 운영 가능											
사회봉사	1일 5시간, 5일 이내 기간으로, 사회봉사기관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수 재량 운영 가능											
특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수 재량 운영 가능-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지침 준수(1일 6시간 5일 이내 권장)-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내외 프로그램 실시 가능											
출석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미인정결석처리)- 해당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 최소화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 진행											
퇴학 (의무교육 대상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조치 전 10일 이내 가정학습 가능(미인정결석처리)- 가정학습 후 반성 및 선도 가능 시 철회, 취소 가능- 처분 시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 안내 ※ 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도 후 신중한 결정 필요. (재심 요청 시 징계조정위에서 퇴학 조치 전 학교의 노력에 대해 살펴봄)											
4	재심의 및 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 통보 시 불복 절차 안내<table><tr><td>학교 내 재심의</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및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학교장은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한 절차로 처리-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음- 재심은 1회만 신청 가능- 재심의 신청 시 재심의 결정 때까지 원 조치 유보</td></tr><tr><td>도교육청 징계조정 위원회</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학 조치만 청구 가능- 조치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 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구※ 신청일부 30일 이내 처리</td></tr><tr><td>행정심판</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조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징계조정위에서 재심을 했으면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td></tr><tr><td>행정소송 (사립=민사소송)</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td></tr></table>	학교 내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및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학교장은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한 절차로 처리-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음- 재심은 1회만 신청 가능- 재심의 신청 시 재심의 결정 때까지 원 조치 유보	도교육청 징계조정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학 조치만 청구 가능- 조치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 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구 ※ 신청일부 30일 이내 처리	행정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조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징계조정위에서 재심을 했으면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 (사립=민사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학교 내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및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학교장은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한 절차로 처리-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음- 재심은 1회만 신청 가능- 재심의 신청 시 재심의 결정 때까지 원 조치 유보											
도교육청 징계조정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학 조치만 청구 가능- 조치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 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구 ※ 신청일부 30일 이내 처리											
행정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조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징계조정위에서 재심을 했으면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 (사립=민사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1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6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근거



- 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6조(불응시 조치)
- 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3 기본방침



- 가. 학생의 징계는 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과 심리적 회복,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나.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불복절차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 다.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등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를 단일기구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부서는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다.
- 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 바.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각 학교의 학교규칙으로써 규정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

- 1) 경기도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본 지침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을 제정·개정하여 운영한다.
- 2) 위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은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내에 규정하거나, 「학생생활규정」의 위임에 따라 별도의 학교규칙으로 규정한다.
- 3) 학생선도관리는 각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

1) 구성 및 임무

- 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 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총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다)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마)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을 할 수 없으며, 학년별로 간사를 달리 둘 수는 있다.

2) 기능

- 가)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 나)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 다)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3) 운영

가) 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의 선도기준표의 내용에 따라 운영한다.

※ 학생생활규정에 '선도기준표'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함

나)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마)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심의 결정시 징계를 병과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

바)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의 장에게 결재받아 시행한다.

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아)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차)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서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카)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 재심의 신청은 조치를 안 날, 즉 통보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하여 5일 이내 신청. 기한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신청 기간이 만료됨.
(근거: 「민법」 제6장 제155조~제161조)

타) 징계처분 미이수 또는 불성실한 이행의 경우 이를 사유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할 수 있으나 해당 학생생활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 징계* 조치별 내용 및 유의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7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1) 학교내의 봉사

가)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다)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2) 사회봉사

- 가)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나)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다)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생생활 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3) 특별교육이수

- 가)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 나)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4) 출석정지

- 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나)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5) 퇴학(의무교육 대상자 제외)

- 가) 적법절차에 따라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신중히 결정한다.
- 나) 학교장은 위원회의 퇴학 심의 결과가 있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학생에 대한 반성 및 행동개선의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다) 위 나)의 가정학습 기간은 1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라)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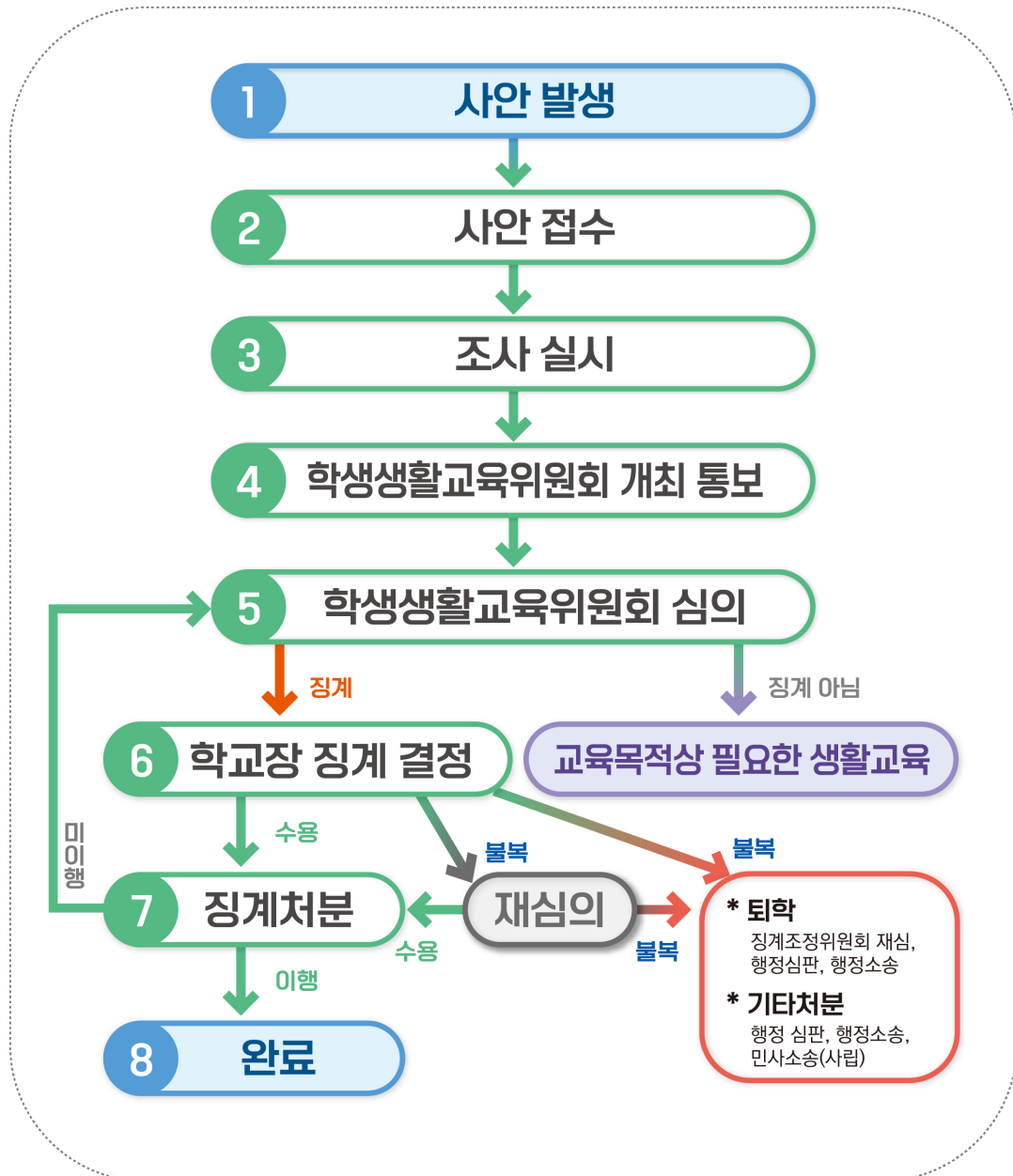
※ 징계와 관련한 출결 처리는 <학교생활기록부 훈령 및 기재요령>의 '출결 상황' 지침을 따름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흐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흐름도

한눈에 보는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의 운영 절차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절차

가.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안 발생

사안 인지 교사가 사건 정황 및 경위, 목격자 등을 파악하여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에게 인계한다.

나.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1) 학생생활규정 위반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 조사한다.

2) 조사 방법

가) 대상 학생 및 목격 학생 등 관련 참고인을 조사한다.

나)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다.

3)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가)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나)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는 금지된다.

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 조사 시 2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바)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4) 자기변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반드시 자필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보호자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성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대상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 위원회 개최 준비

- 1)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위원회 개최에 관하여 학교의 장에게 결재를 득한다.
 - 가) 사안 발생 개요,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 나)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 다) 그 밖에 학생 관련 참고 사항
 - 라)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 2)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가)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이유
 - 나)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고지
 - 다)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라)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됨을 고지
 - 마)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라. 위원회 개최·진행

- 1)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 가) 간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의 질의·응답
 - 나)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의 질의·응답
 - 다)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위원의 질의·응답
- 2) 심의
 - 가)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 심의
 - 나) 그 밖의 학생 지도 방법 논의
 - 다)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라) 심의 결정 시 징계를 병과하여 부과 금지
- 3)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밖에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금지

마. 심의 결과 확정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의 장이 결재

바.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결정통지 포함내용(서면 통지)

- 1) 결정 이유(위반 조항) 등
- 2) 조치결정내용
- 3)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 및 청구 기간
- 4) 조치결정통지서를 인편으로 통지하거나 학부모(보호자)가 방문 수령한 경우에는 수신 날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령확인서를 받아 보관한다.

사. 조치 이행 계획 수립 및 관리

아. 조치 이행·보고

- 1) 본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한다.
- 2) 조치 대상자, 조치 내용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 3) 조치 이행 결과에 대해 학교의 장에게 결재를 득한다.



7 학교단위 불복 절차: 재심의



가.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 1)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2)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 3)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 4) 재심의 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나. 재심의 여부 결정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 재심의

- 1)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 2)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가)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나)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라. 학교장 조치

- 1)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 2)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 3) 조치 이행

8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

가. 재심청구

- 1)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2)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한다.
- 3) 재심 청구는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 4) 재심 청구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가) 청구인 및 학생 성명, 주소, 연락처
 - 나) 피청구인
 - 다) 퇴학 조치 일자 및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짜
 - 라) 청구 취지 및 사유 기재

나. 재심

- 1)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에게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2)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 3)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고, 다만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 4) 위원은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외된다.
- 5)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 이후 절차

-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재심 결정서 송부
- 2) 피청구인은 조치 이행 결과 보고

9 그 밖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 행정심판(국·공립학교)

- 1) 행정심판은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심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여,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행정기관에서의 권리구제 절차이다.
- 2)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3)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4)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 방법〉

🌐 온라인 접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 서면(방문 또는 우편) 청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031-249-0677~0679, 0688

나. 행정소송(국·공립학교)

- 1) 행정소송은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심을 법원에 의해 판단받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로, 그 소송은 행정심판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
- 2)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3)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민사소송(사립학교)

- 1)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민사소송(무효확인소)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간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등이 있어야 조치에 대한 절차가 정지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10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별 활용 서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서식 목록

※ 수령확인서: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를 인편으로 통지 또는 대면 수령 등의 경우에 활용

구분	단계	내용	활용 서식
학생 생활 교육 위원 회 운영	사안 발생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안 발생	[서식1] 사안 접수 대장
	사안 조사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서식2] 학생 자기변론서 [서식3] 목격자 확인서(필요시) [서식4] 교사 사실 확인서(필요시)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서식5] 사안 조사 보고서
	위원회 개최 준비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및 학교장 결재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	[서식6] 출석 요청서 [서식7] 서면 의견서(필요시) [서식8] 수령확인서(서면 미통지 시)
	위원회 개최 · 진행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서식9] 시나리오
		심의	[서식10] 기피 신청서(필요시)
	심의 결과 확정	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 결재	[서식11] 징계 의결서 [서식12] 회의록
	조치 결정 통지	조치 결정 및 이행사항 서면 통지	[서식13] 조치 결정 통지서 [서식14] 재심의 신청서 [서식8] 수령확인서(인편 통지·대면 수령 시)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학교장 결재	[서식15] 조치 이행 계획서
불복 절차	조치 이행·보고	조치 이행	[서식16] 조치 대장
		조치 이행 결과 학교장 결재	
	재심의 여부 결정	재심의 신청 시 재심의 여부 결정 및 통지	
외부 기관 의뢰	재심의 조치 결정 통지	재심의(학교 단위 불복절차) 조치 결정 통지	[서식17] 재심의 조치 결정 통지서
	재심청구	재심(도교육청 단위 불복절차)청구	[서식18] 재심청구서 [서식19] 심사 자료(생활) 제출서 [서식20] 재심청구 취하서
외부 기관 의뢰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조치 이행·보고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조치 이행·보고	[서식2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22] 사회봉사 의뢰서 [서식23]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서식24] 특별교육 의뢰서 [서식25] 특별교육 이수 결과 보고서 [서식26]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

구분	내용	활용 서식
공문 기안	업무관리시스템-기안-샘플서식-서식명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입력-조회-6종 서류 중 선택하여 활용	[기안문 서식1]~[기안문 서식6]

서식 1

학생생활교육 사안 접수 대장

※ 사안 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사안 번호	신고자 (기관)	접수 일시	접수자	접수내용 (육하원칙)	관련 학생·학부모(보호자) 통보	학교장 보고	비고
생교 20-1	○○○순경 (○○경찰서)	20.00.00. 00:00	○○○ (교사)	20 년 0월 0일 00시경 김○○, 박△△학생이 함께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과자와 음료를 훔침	20.00.00. 00:00 (유선)	20.00.00. 00:00 (대면)	

서식 2

학생 자기변론서

※ 학생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학교 밖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② 다른 반 친구 () ③ 기 타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서식 3

목격자 확인서

-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학교 밖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서식 4

교사 사실 확인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학교 밖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서식 5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소속	학년 반	성별	남 / 여
사안 제목						
사안 발생 일시						
사안 발생 장소						
관련 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관련 학생생활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 필요시
3. 사실 확인서 1부. ※ 필요시

서식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사유	관련 학생	성명		소속	학년 반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위반 사항	위반 행위	※ 위반 행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초·중·고등학교장

서면 의견서

관련 학생	성명		소속	학년 반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서식 8

수령확인서

- ※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한 경우에 활용
 ※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를 인편으로 통지 또는 대면 수령 등의 경우에 활용

서류명	
수령인 성명	
수령인 주소	
연락처	
수령 장소	
확인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학생명 :</p> <p>학생과의 관계 :</p> <p>성명 : (서명 또는 인)</p>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시나리오

1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 주세요. (간 사) 재적 위원 8명 중 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본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제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 ○○학년도 제○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되 회의 종료 시까지 성원 유지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0조제0항에 따라 학교규칙 위반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전 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번호 ○○학교-생교-20○○-0호 사안으로서 ○○○ 학생의 ○○ 사안에 관한 심의 건입니다.	

2 제척, 회피 절차의 진행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제척, 회피 안내 (필요시)	(위원장) 안전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피 신청이 없는 경우] (위 원) 없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위원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도 되겠습니까? (위 원) 네. 그렇습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제척 사유: 해당 학 생 또는 보호자와 친 족관계 또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 회피: 제척 사유에 해 당하나 스스로 해당 안 건 심의에서 물러남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 원) ○○○ 위원님께서는 본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00조제00항제00호에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 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을 심의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제00항제0호 규정에 의거 ○○○ 위원님이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위 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제00항제00호에 의거 ○○○위원은 제척(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제척(또는 회피)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귀가(또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위원 귀가 또는 대기)	제척·회피 시 위원 정족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척·회피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

3 위원 주의사항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주의사항 안내	<p>(위원장)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p> <p>(시간 부족할 경우 아래 3가지 주의사항 간단히 전달)</p> <p>첫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회복 그리고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p> <p>둘째, 위원님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생의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셋째, 본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안과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4 사안 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안 보고	<p>(위원장) 그럼 사안 보고가 있겠습니다.</p> <p>(시간이 부족할 경우 아래 4줄 생략 가능)</p> <p>(위원님께서 사안 조사 보고서 등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선도 조치 결정을 위해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께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간사는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심의 시작 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이루어진 후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쟁점, 질의	<p>(간 사) 사안 보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사전 협의 시의 사안 개요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div>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안 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간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  필요시 사안 관련 내용 질의응답 </div>	
대리인 (변호인) 참관 허용 여부 심의 (신청 시)	<p>(간 사) 본 사안 ○○○ 학생의 변호인이 본 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변호인 참석 여부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장) 위원님들은 ○○○ 학생의 변호인 참석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p> <p>(위 원) ○○○ 학생의 변호인의 참석은 허용하되 변호인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으며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질문에 대신 답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주었으면 합니다. 단,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의 진술을 모두 마친 후 별도의 시간을 주어 변호인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위원장) 네 그럼 변호인의 참석을 허락하되,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으며,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질문에 대신 답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되,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진술을 모두 마친 후 3분 이내로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p>	

5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의견 진술, 질의응답, 불복절차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관련 학생 학부모 (보호자) 입장 및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여부) 확인	(위원장) 먼저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간사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세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입장 </div>	- 변호인 등 대리인에 대한 선임권 보장
	(위원장) 본 사안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보호자)께서도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 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 학부모(보호자)가 아닌 경우 참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음
기피신청	(위원장)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 신청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시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 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 개의 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함
	<p style="text-align: center;">[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피 신청이 없는 경우]</p>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없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 신청하실 위원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p> (학부모(보호자)) ○○○ 위원을 (~사유)로 기피 신청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리인의 기피 신청 (학부모(보호자)) ○○○ 위원은 당일 흡연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께서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div> (위원장) 네, 학부모(보호자)께서 신청하신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 사유를 바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를 위해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의거 ○○○ 위원이 기피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대리인)께서는 기피 여부 결정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실로 이동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간사에 의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기실로 이동)</p> (위원장) 이제부터 학부모(보호자)께서 신청하신 ○○○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 여부 결정은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p>(위원 간 상호 협의)</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위원 간 상호 협의</p> <p>(위 원) ○○○ 위원은 “당일 흡연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께서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라는 해당 학생 측의 기피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p> <p>(위원장) 저 또한, 현장에서 지도했던 ○○○ 위원님이 해당 학생의 학교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div> <p>(위원장)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p> <p>(위원장) 기피 여부 결정은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의거 기피 신청 ○○○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 위원님 기피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 위원님에 대한 기피를 결정하겠습니다.</p> <p>(위원장) ○○○ 위원님은 귀하(또는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님을 다시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p> <p>(간 사) 네, 알겠습니다.</p> <p>(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리인 재입장)</p>	
주의사항 안내	<p>(위원장) 다음으로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첫째, 발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위원회에 참여해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또한, 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회복 및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한 것입니다.</p> <p>학생과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신뢰해주시고,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아래 내용은 대리인 신청 학생 입실 때 만 안내(해당 시)</p> <p>(위원장)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질의 응답 전에 입회를 요청한 변호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허가하였습니다. 단, 변호인의 별도 질문을 받지 않으며,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질문에 대신 답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되,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진술을 모두 마친 후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드리면 3분 이내로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div> <p>(위원장) 그 밖에 위원회 진행과 절차에 관해 질문 있으십니까?</p> <p>(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질문 사항 응답)</p> <p>(위원장)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해당 사안 설명이 있겠습니다.</p>	주의사항의 경우 별도 유인물을 제작·안내 가능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안설명 및 사실여부 확인	<p>(위원장)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간사는 사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간 사)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사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div><div>🕒 간사의 사안 설명 (사안 개요 및 경위)</div><div><table><tr><td>관 련 학 생</td><td>○ ○ ○ 중</td><td>○ ○ ○</td><td>※ 사안일시 : 20○○년 4월 ○일 ○시경 - 20○○년 ○월 ○일 ○요일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와 함께 담배를 피운 사안입니다.</td></tr></table></div></div> <p>이상입니다.</p> <p>(위원장)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잠시 후 질의응답 시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div><div>🕒 관련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진술, 추가자료 제출</div></div>	관 련 학 생	○ ○ ○ 중	○ ○ ○	※ 사안일시 : 20○○년 4월 ○일 ○시경 - 20○○년 ○월 ○일 ○요일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와 함께 담배를 피운 사안입니다.	
	관 련 학 생	○ ○ ○ 중	○ ○ ○	※ 사안일시 : 20○○년 4월 ○일 ○시경 - 20○○년 ○월 ○일 ○요일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와 함께 담배를 피운 사안입니다.		
	위원과 학생측 질의응답 및 의견 진술	<p>(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div><div>※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div><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의 의도, 계기, 상황, 이유 등을 질문-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뉘우침, 앞으로의 다짐 등) 관련 확인-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내용(학부모(보호자)를 통해서 가정 상황, 학생 심리 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을 확인</div></div> <p>(위원 및 학생측 질의응답)</p>	<p>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p> <p>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학생을 먼저 퇴실시키고 학부모(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융통성 있는 진행 필요</p>			
마지막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p>(위원장)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짐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div><div>🕒 관련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진술</div><div><div>🕒 변호인 진술 3분 (해당 시)</div></div></div> <p>이상으로 ○○학생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p>	<p>학생 먼저 최종진술 후 학부모(보호자) 진술 등 상황에 맞게 진행</p>			
사후 과정 및 불복절차 안내	<p>(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께 감사드립니다.</p> <p>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불복절차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p> <p>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님께서도 귀가하셔도 됩니다.</p>	<p>관련 학생 측의 귀가 안내</p> <p>불복절차에 관한 별도 유인물 제작·제공 가능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정회 가능</p>				

6 참고인 진술 (필요시, 순서 변경 가능)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참고인 진술 및 질의응답	<p>(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간사께서는 참고인 ○○○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p> <p>(참고인 입장) (위원장) 본 위원회에 참고인으로의 출석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은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참고인 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학교 교직원: 해당 학교의 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보호인력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사안 관련 사실, 관련 학생의 교우관계, 사안 발생 이후 학교생활 태도, 반성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관련 학생의 심리상태 관련 등을 확인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 학생의 인지, 심리, 행동 특성 등을 확인 다문화 교육 전문가: 다문화 학생의 언어 및 문화적 특성 등을 확인 의사, 법률전문가 등도 필요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p>※ 유의 사항: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므로 참고인은 필요한 때에만 회의에 출석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의에 참석하거나, 정계 결정에 관여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p> </div> <p>(위원장) 본 사안과 관련된 참고인(담임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참고인 진술</p> </div>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참고인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고인 ○○○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p> <p>(참고인 퇴장)</p>	위원회 개최 이전 참고인 사전 조사 필요

7 안건 심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학생 선도 조치 논의	<p>(위원장) 다음은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중 및 선도기준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뉘우침, 앞으로의 다짐 등에 비추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위원들 간 협의</p> </div>	<p>- 위원들은 조치와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침</p>

8 의결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의결 조치결정	<p>(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p> <p>(위원장) 심의한 결과, 학생생활규정 제〇〇조제〇항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점, 학생이 ~반성하는 점, 학생이 ~다짐하는 점, 가정에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인해 〇〇〇〇의 조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조치를 결정</p> <p>(선도기준표 참조)</p> <p>- 간사는 필요시 조치 이행 방법 및 집행 가능성, 계획 등을 설명</p>																		
조치 시간 결정	<p>(위원장) 다음은 학생에 대해 내려진 선도 조치의 이행 시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div><div>🕒 위원들 간 협의</div></div> <p>※ 조치 이행 시간 결정</p> <table><tr><th>조치</th><th>학교내의 봉사</th><th>사회 봉사</th><th>특별교육</th><th>출석정지</th><th>퇴학</th></tr><tr><td>이행 내용 및 기간</td><td>()시간 20 년 0월 0일 ~ 0월 0일까지 이행</td><td>()시간</td><td>()시간</td><td>()일</td><td>집행예정일 (년, 월, 일)</td></tr><tr><td>비고</td><td>2시간/일×5일= 10시간 이내 (일수제한운영가능) *1일 최대 2시간</td><td>5시간/일×5일= 25시간 이내 (일수제한운영가능) *1일 최대 5시간</td><td>30시간 이내 (6시간/일×5일) (일수제한운영가능) *최대 30시간</td><td>10일 이내/회, 30일 이내/연간 *1회 최대 10일</td><td>학교장 조치 전 10일 이내 가정학습 가능 (단, 미인정결석처리) <가정학습 기간 중 반성 선도 가능성이 여تب일 시 퇴학 조치 취소 가능></td></tr></table> <p>(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상정 번호 〇〇학교-생교-20〇〇-0호 〇〇〇 학생의 징계(선도) 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〇〇조에 의거 〇〇〇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로 ‘〇〇〇〇 0시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p> <p>(위 원) 없습니다.</p> <p>(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번호 〇〇학교-생교-20〇〇-0호 〇〇〇 학생의 징계(선도) 조치로 학생생활규정 제〇〇조에 의거 ‘〇〇〇〇 0시간’으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p> <p>(위원장) 위원분들께서는 위원회 종료 후 본 위원회 의결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조치	학교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이행 내용 및 기간	()시간 20 년 0월 0일 ~ 0월 0일까지 이행	()시간	()시간	()일	집행예정일 (년, 월, 일)	비고	2시간/일×5일= 10시간 이내 (일수제한운영가능) *1일 최대 2시간	5시간/일×5일= 25시간 이내 (일수제한운영가능) *1일 최대 5시간	30시간 이내 (6시간/일×5일) (일수제한운영가능) *최대 30시간	10일 이내/회, 30일 이내/연간 *1회 최대 10일	학교장 조치 전 10일 이내 가정학습 가능 (단, 미인정결석처리) <가정학습 기간 중 반성 선도 가능성이 여تب일 시 퇴학 조치 취소 가능>	<p>학생의 학습결손을 고려하여 결정</p>
조치	학교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이행 내용 및 기간	()시간 20 년 0월 0일 ~ 0월 0일까지 이행	()시간	()시간	()일	집행예정일 (년, 월, 일)															
비고	2시간/일×5일= 10시간 이내 (일수제한운영가능) *1일 최대 2시간	5시간/일×5일= 25시간 이내 (일수제한운영가능) *1일 최대 5시간	30시간 이내 (6시간/일×5일) (일수제한운영가능) *최대 30시간	10일 이내/회, 30일 이내/연간 *1회 최대 10일	학교장 조치 전 10일 이내 가정학습 가능 (단, 미인정결석처리) <가정학습 기간 중 반성 선도 가능성이 여تب일 시 퇴학 조치 취소 가능>															



9 폐회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폐회	(위원장) 지금까지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모두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의결서 서명	(‘징계 의결서’ 위원 서명)	징계 조치 확인 후 ‘징계 의결서’ 서명



기피 신청서

* 사안 번호:

	학년반	학생 성명	학부모(보호자) 성명
신청인			
	주소		
신청내용	기피 대상자		
	신청이유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 제0조제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000 학생 학부모(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귀중

서식 1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 서명(날인)은 내부결재 시, 병렬협조로 대체 가능

20○○학년도 제○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성명	학년 / 반	의결 사항		
		징계내용*	징계 수준	비고
김○○	○ / ○	특별교육 이수	○시간	
이○○	○ / ○	학교내의 봉사	○시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징계내용은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의무교육대상자 제외)만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없음

위 조치 의결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직책	성명	서명(날인)	직책	성명	서명(날인)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회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제척, 기피, 회피 절차의 진행 3.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4. 사안보고 5.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불복절차 안내 6. 참고인 진술 7. 안전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자: 간사 ○○○

서식 13

조치 결정 통지서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조에 의거 조치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 결정 통보 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위반 조항 및 조치 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조치 결정 내용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치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상위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또는 행정소송 - 사립학교의 경우는 민사소송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자: 000, ☎ 000-000-000)			
20 . . .			
○○초·중·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14 >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 구 인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관계	본 인 () 보호자 ()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학교 ()학년 ()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징계 조치 결정 통지일		
징계 조치 결정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징계 조치 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		
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재심의 청구 이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 참고사항: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사안 번호	생교 20-○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항	① 흡연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② 반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		
대상 학생 (학년 / 반)	징계 이행(시행) 계획				
○○○ (○ - ○)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학교내의 봉사	○시간	20 .00.00.~20 .00.00., 방과후 ○시간씩	교내외 환경정화 활동	○○부 (교사 ○○○)
○○○ (○ - ○)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특별교육 이수	○시간	20 .00.00., 10:00 ~ 12:00	상담	○○학교 / 위클래스 (교사 ○○○)
○○○ (○ - ○)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출석정지	2일	20 .00.00.~20 .00.00., 시험기간 제외	과제 부여 후 가정학습 (가정학습프로그램)	○○부 (교사 ○○○)
※ 징계내용과 수준은 변경 불가. 단, 징계 기간 및 기관 등은 학교 및 기관의 여건상 변동될 수 있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대장

사안 번호	학급	성명	징계 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계 사유	이행 여부
생교 20-1	0/0	000	학교내의 봉사	5시간	20 .00.00. ~ 20 .00.00.	흡연	

[참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대장은 학교의 장에게 결재를 득하고, 해당 문서는 비공개로 설정한다.

재심의 조치 결정 통지서

OO학생생활규정 제OO조, 제OO조에 의거 재심의 조치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 결정 통보 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위반 조항 및 조치 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개최일			
조치 결정 내용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상위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또는 행정소송 - 사립학교의 경우는 민사소송 ◦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자: ○○○, ☎ 000-000-000)			
20 . . .			
○○초·중·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18

재심청구서

					접	번호	-	
					수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성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학생과의 구체적 관계]			
	학생	성명		소속	()학교 ()학년 ()반			
피청구인	학교명	()학교		소재지	()시		학교장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개최일			결과 통지일 (통지서 날짜)			결과통지서 수령 방법	인편, 등기
							등기번호 (13자리)	
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예) 퇴학 조치 취소 ※조치의 변경은 불가능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 별지로 작성 가능(분량의 제한 없음)						
<p>「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재심 청구인) : (인)</p> <p>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p>								
<p>※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p>								

심사 자료(생활) 제출서

청 구 인	성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학생과의 구체적 관계]	
	주소	□□□□□					
	학생	성명		소 속	()고등학교 ()학년 ()반		
피 청 구 인	학교명	() 고등학교		소재지	()시	학교장 성명	
				연락처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개최일			결과통지일 (통지서 날짜)		결과통지서 발송 방법	인편, 등기 (등기번호)
						결과통지서 수령일	
기 준				지도 및 조치 내용			
퇴학 처분 대상자의 적법성(시행령 제31조 제5항)				※징계와 관련된 사건의 개요를 일자별로 자세히 기재			
징계 시 의견 진술, 인격 존중 등 교육적 방법 적용사항							
사유의 경중에 따른 징계의 단계별 적용과 개전의 기회 부여				※ 이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내역 등 해당 학생이 행한 구체적인 선도 위반 사실을 일자별로 자세히 기재 (분량의 제한 없음)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실시 사항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퇴학 전 재심의, 가정학습 부여 등 교육적 조치 사항							
기타(인권 존중, 종합의견)				※ 학교의 종합적인 최종 의견을 자세히 기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청구인)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하

[첨부: 증빙자료 목록(증빙자료 첨부) 총 8부]

◎ 참고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②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20

재심청구 취하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학생과의 관계		
피청구인	() 학교장	
취하 취지	예) 퇴학 조치 수용, 행정심판 제기, 행정소송 제기 등	
취하 이유	예) 퇴학 조치 수용, 행정심판 제기, 행정소송 제기 등	

위와 같이 재심청구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취하서 작성	→	접수
취하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학생	성명		성별	
	전화(휴대전화)		주소	
학부모 (보호자)	성명		성별	
	전화(휴대전화)		관계	

상기 본인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 항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사회봉사 의뢰 기관 특별교육 의뢰 기관		
② 이용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3조 등의 근거에 의해서 참가자의 개인정보수집·활용 및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학교, 사회봉사 의뢰기관 경기도교육청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등에 관련 정보 제공		
③ 제공 항목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연락처, 주소, 특별교육 의뢰 사유	☐ 동의 ☐ 마동의
	보호자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특별교육 의뢰 사유	☐ 동의 ☐ 마동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서 작성일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서류 보유기간까지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서식 22

사회봉사 의뢰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연락처	
학교 정보	담당교사		학번	
	담임		연락처	
학부모(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1		연락처2	
사회봉사기관 담당자	성명(정)		연락처	
	성명(부)		연락처	
의뢰 신청	○ 대상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의뢰인 의견	○ 학생 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 지도 시 유의할 점 :			
상기와 같이 사회봉사를 의뢰하며,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인적 사항, 상담 내용,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 ○○초·중·고등학교장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귀교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결과 확인 및 봉사확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 위탁학생 명단

연번	학번	생년월일	성명	교육 기간	교육 시간	선도처분	연락처
1	(예시) 0-0	0000-00-00	000	20 .00.00.~ 00.00.(0일간)	25	사회봉사	담임 : 000-0000-000 부모 : 000-0000-000 학생 : 000-0000-000

□ 사회봉사 이수 담당자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	-----	--------------

□ 위탁학생 사회봉사 결과

봉 사 1 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 엄수/지각 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예시) 매우 양호함/양호함/보통/미흡/매우 미흡		
봉 사 2 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 엄수/지각 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봉 사 3 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 엄수/지각 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특별교육 의뢰서

1. 학교 정보

학교명		학교 연락처	
담당교사		담당교사 긴급 번호	

2. 학생/학부모(보호자) 정보

학생교육 ()			학부모(보호자)교육 ()		
의뢰 기간			의뢰 기간		
학생 성명		성별 : 남/여	학부모(보호자) 성명		성별 : 남/여
학년반			학생 성명 (학년반)	학년 반	
학생/학부모 (보호자)	주소 : 전화번호 : 학부모(보호자)(), 학생()				

3. 특별교육 의뢰 사유

학교폭력	사안:	(조치유형 : 5호)
규정 위반	사안:	(조치유형 : 호)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치유형 : 호)
분류	☐ 학교폭력유형 : ()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 규정 위반 사안 : () (※ 흡연 / 음주 / 절도 / 기물파손 / 시험부정행위 / 징계 중 교칙 위반 / 지각, 미인정 결석 등 출결 관련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 교육활동침해유형 : () (※ 상해 /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손괴 / 성범죄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참고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인을 기관에 특별교육 이수를 의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초·중·고등학교장: (직인)</p>		

특별교육 이수 결과 보고서

※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기관 이외의 기관 위탁 및 프로그램 참가 시 변형하여 사용 가능

1. 학생 인적 사항

성명		학교	
		학번	

2. 특별교육 이수 담당 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3. 프로그램 내용

순	일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출결 여부
1			
2			
3			
4			
5			

4. 평가

20 년 월 일

○○○○ 센터장 (직인)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

※ 본 기관에서는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를 위탁받은 결과 그 이수 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기관			교육기관 담당자	
			기관연락처	
학생교육() 1)~3) 표기	1)학교명		2)학생 학년반	학년 반
학부모(보호자)교육() 1)~4) 모두 표기	3)학생성명		4)학부모(보호자)성명	
학교에서 의뢰한 기간 및 시간	학생	20 . . . () ~ 20 . . . () 총()시간		
	학부모 (보호자)	20 . . . () 00:00 ~ 00:00 총()시간		
특별교육 의뢰사안	선도 조치유형()호 사유기재			
교육평가 및 참고사항				
교육 이수 시간	학생	20 . . . () ~ 20 . . . () 총()시간		
		이수 / 미이수 / 부분이수	우수 / 보통 / 미흡	
	학부모 (보호자)	20 . . . () 00:00 ~ 00:00 총()시간		
		이수 / 미이수 / 부분이수		
위와 같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 센터장 (직인)				

※ 본교에서는 특별교육 이수 기관의 특별교육 이수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학교확인란	20
	○○초·중·고등학교장 (직인)

기안문 서식 1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계획(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계획(20○○-○호)

1. 관련: ○○○○학교-00(20○○. 0. 00.) ※ 「학생생활규정」 내부결재 문서번호
2. 20○○학년도 제○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가. 일시: 20○○. 0. 00.(요일) 00:00
 - 나. 장소: 본교 대회의실
 - 다. 안건: 학생생활교육 관련 사안 심의

- 붙임 1.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1부.
2. 학생 자기변론서 1부.
3. 목격자 확인서 1부. ※ 필요 시
4. 교사 사실 확인서 1부. ※ 필요 시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요청서 및 서면 의견서 1부. 끝.

기안문 서식 2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20○○-○호)

1. 관련: ○○○○학교-00(20○○. 0. 00.)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2. 20○○학년도 제○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1부.
 2. 징계 의결서 1부.
 3. 조치 결정 통지서 1부. 끝.

기안문 서식 3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20○○-○호)

1. 관련: ○○○○학교-00(20○○. 0. 00.)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2. 20○○학년도 제○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 이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1부. 끝.

기안문 서식 4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이행 결과 보고(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이행 결과 보고(20○○-○호)

1. 관련: ○○○○학교-00(20○○. 0. 00.)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 문서번호
2. 20○○학년도 제○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이행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조치 대장 1부.

2. 사회봉사(또는 특별교육) 확인서 1부. ※ 필요시 끝.

기안문 서식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사회봉사(또는 특별교육) 신청(예시)

수신 OO센터장

(경유)

제목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사회봉사(또는 특별교육) 신청(20○○-○○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의 이행을 위해 사회봉사(또는 특별교육)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가. 교육 희망 일정(총 0시간) * 기관과 협의한 일정 작성
 - 1) 20○○. 0. 00.(요일)~0. 00.(요일) 00:00~00:00(0시간*0일=0시간)
 - 2) 20○○. 0. 00.(요일) 00:00~00:00(0시간) * 하루인 경우
 - 나. 장소: * 의뢰 기관명
 - 다. 참석 대상 학생 * 비공개 6호 설정. 개인정보보호 철저

학년	반	이름	연락처

- 붙임 1. 사회봉사(또는 특별교육) 의뢰서 1부. * 기관 양식 사용 가능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기안문 서식 6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신청 및 결정 결과(예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신청 및 결정 결과(20○○-○호)

1. 관련: ○○○○학교-00(20○○. 0. 00.)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2. 20○○학년도 제○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가. 청구인: 0학년 0반 ○○○
 - 나. 원조치: 출석정지 00일
 - 다. 접수일: 20○○. 0. 00.(요일) ※ 통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청
 - 라. 결정일: 20○○. 0. 00.(요일) ※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결정
 - 마. 결정 사항: 재심의 수용 또는 불수용
 - ※ 수용 시 재심의 개최 계획 공문 결재
 - ※ 불수용 시 사유 기재

붙임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1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예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2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제13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내의 봉사

1. 하루 ○○시간 이내로 하며, ○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시간 이내로 하며, ○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결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
 - 나.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및 확인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⑤ 퇴학

1. 퇴학조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다. 기타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자
2.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퇴학처분 전 조치)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가정학습기간 이후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퇴학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음 선도기준은 예시로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내용 및 기준을 변경, 추가하여 운영

항	내용	선도기준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1	미인정 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단,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3회는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함)	○	○	○		
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3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4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참여한 학생		○	○	○	○
5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6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7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9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0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1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12	도박을 한 학생	○	○	○		
13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14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15	흥기를 휴대한 학생	○	○	○	○	○
16	교원 외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
17	수업 시간 중 지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	○	○	○	○	
18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학생	○	○	○	○	

※ 위 각 항의 사항은 예시로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내용 및 기준을 변경, 추가하여 운영

제1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재심의 신청) ①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18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17조 신청에 대하여 재심의 여부를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9조(재심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 제20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21조(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제22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24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 제25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12 통고제도 개요 및 절차

가. 통고제도 개요

☞ 정의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여 비행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소년법」제4조제3항

☞ 관할 기관 : 가정법원 소년부

☞ 통고 주최 :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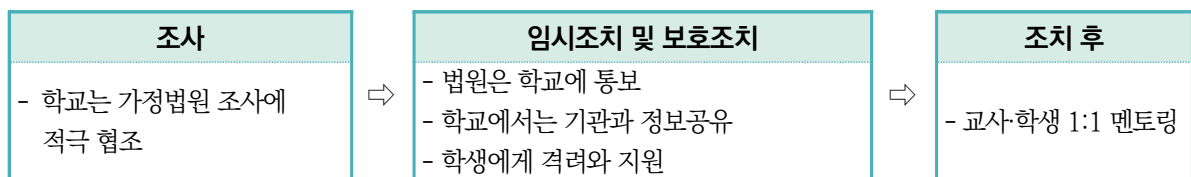
☞ 대상 학생

- 학생비행 대상 학생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 학생
- 조치(징계) 불응 학생 및 조치(징계) 이후 개선되지 않은 학생
- 가정의 구조적 결손으로 비행이 그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학생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 이행 거부하는 학생
- 수업방해 및 교권침해 행위가 있는 학생

☞ 의뢰 절차

-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통고
 - ※ 단, 학교장이 요청하기 전에 학부모(보호자)가 직접 통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통고 방법: 서면 또는 구두
- 문의처: 수원가정법원(☎210-1114), 의정부지방법원 (☎828-0114)
 - 홈페이지(<http://swfamily.scourt.go.kr>), (<http://uijeongbu.scourt.go.kr>)

☞ 통고 이후 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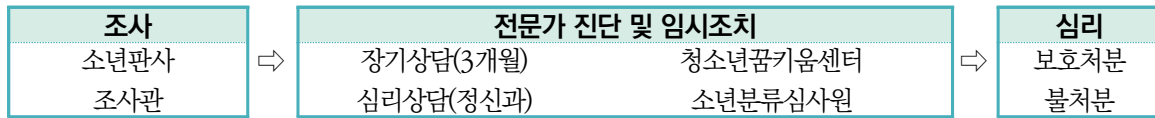


- 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위하여 법원의 통고제도 활용 지도
- 학생·학부모(보호자)의 부정적 인식 형성 예방을 위한 학교 측 지원 필요

☞ 효과

- 소년비행의 초기 단계에서 법원에 의뢰하여 문제해결
-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부담을 주지 않고 소년 문제해결
- 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표에 미기재로 향후 불이익 가능성 배제

나. 통고제도 절차



☞ 조사 : 통고 소년 및 학부모(보호자), 참고인에 대한 심문 및 조사

☞ 전문가 진단과 임시조치

- 장기간의 상담(3개월)을 통해 성행변화를 실질적으로 관찰(보호자 동참)
- 장기상담기관에서 3개월간 주 1회 집중상담 실시(심리상담)
- 심리 및 정신과적 상담(치료) 필요 시 실시
- 전문적 상담 및 치료로 근본치료 및 성행교정 기대(경기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 집중교육 및 상담(5일) 실시(보호자 동참)
- 보고서 제출 : 환경조사, 심리검사, 보호자상담, 교육태도 비행분석(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비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소정의 교육 및 조사 실시
- 위탁 조사 기간은 학교 출석 기간으로 인정

☞ 심리 후 보호처분

-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화해권고제도 :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 시간	대상 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통고서(학교장용)

○○가정법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직장)	() -	휴대전화	() -
	담당교사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소 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주 소			
	전화번호	() -		
소년의 보호자	성 명		소년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통고사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선도(징계)위원회의 조치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
	☐ 수업방해 및 교권침해 행위가 있음
	☐ 기타()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p>(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참고사항 :</p>
--

1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Q&A 모음



Q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년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 발생 시 해당학생이 속하는 학년의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진행해도 될까요?

A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단일기구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등 관리의 사항에 관해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치결정의 균질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단일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Q2.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징계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학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학생 또는 그 학부모(보호자)가 공개를 신청한 회의록(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외)이나 학생이 작성한 자기변론서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하며, 그 밖의 자료는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할 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사립학교 포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가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동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Q3.

9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3월의 흡연에 대하여는 학교내 봉사, 4월의 절도에 대하여는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징계 사유별로 조치할 수 있나요?

A

각각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닌 행위를 종합하여 징계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각 행위 발생 당시 학교는 해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9월경에 이르러서야 인지하게 된 것이라면, 9월 개최 예정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흡연, 절도 행위를 종합하여 하나의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4.

학생이 1학년 때 흡연으로 3회 적발된 적이 있고 2학년 때 다시 흡연이 적발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치 시 기존 흡연 적발 횟수는 고려할 수 없는 건가요?

A

기존의 흡연 횟수를 고려하여 선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지속성, 반성 정도, 선도의 기대 가능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과거 동일한 행위의 발생 및 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때 단순 횟수 누적에 의한 조치의 기계적 적용(유사 상벌점제 형태)은 지양하고, 학생건강을 위한 금연교육을 병행하는 등 교육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Q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안내하였으나 학생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계속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A

학생이나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는 가능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거나 출석하기 어렵다면 진술서 등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의견 진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 진술의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포기한다면, 일정 기한을 정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

Q6.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꼭 등기로 하여야 하나요?

A

행정청의 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조치 결정 통지서는 우편 송달 등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 편에 보내거나 학부모(보호자)가 방문 수령한 경우에는 수신 날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령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7.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면서 재심의,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A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 제1항에서는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Q8.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3일의 조치가 있었고, 이에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에 재심의 신청을 하여 재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심의 결과 출석정지 3일의 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생 및 보호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처분을 다룰 수 있을까요?

A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국·공립학교), 민사소송(사립학교)를 통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사립학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Q9.

징계 처분을 받고 당사자는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스스로 재심을 할 수 있는지요?

A

재심의 요청이 없더라도 학교장이 판단하여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 처분보다 과중한 처분은 불가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 조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심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Q10.

학교 재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한 기한은 언제 인가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징계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일반적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합니다.

Q11.

학생이 학교 밖에서 절도 및 도박 등의 사항으로 경찰서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이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A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생이 절도 및 도박 등으로 경찰서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생생활규정에 이러한 사유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Q12.

학생이 미인정결석 등을 이유로 특별교육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도 불성실한 태도와 교육기관 이탈 등으로 미이수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징계 조치의 불성실한 이행'을 사유로 하여 다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학생이 선도처분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징계의 사유로 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에도 '징계처분 미이수 또는 불성실한 이행'이 해당 학생생활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Q13.

흡연을 이유로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사회봉사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회봉사 기관에 보내는 대신 금연프로그램 참가를 명령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사회봉사의 이행은 학교에서 지정한 사회봉사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사회봉사 조치와 별도로 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징계 이외 생활교육 방법으로써 학생에게 금연 프로그램 참가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흡연을 이유로 한 선도 조치라면 곧바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 보다는 금연교육 등 교육적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4. 퇴학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가정학습기간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나요?**A**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6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에게 시정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학교장 역시 퇴학 처분을 재고하는 숙려기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 그러므로 학교장은 가정학습기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15. 퇴학처분을 할 때, 가정학습기간은 언제 부과하여야 하나요?**A**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부과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퇴학처분을 하기 전’이란 학교장이 퇴학이라는 처분행위를 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하기로 하는 심의 결과가 있고, 이를 학교장이 처분하기 전에 가정학습기간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Q16. 퇴학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가정학습기간은 며칠을 부과하여야 하나요?**A** 10일 이내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에 대해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할 때, 퇴학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가정학습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이는 출석정지 처분과 동일한 결과이므로, 출석정지 처분의 1회 상한인 10일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17.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생활규정의 선도처분 기준 외 행위에 대한 징계는 가능한가요?**A** 가능하지 않습니다.

- 학생생활규정의 선도처분 기준 외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선도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Q18. 학생생활규정의 선도처분 기준에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넣어도 되나요?

- A**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학교규칙 위반 행위라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 학생의 해당 행위가 '학교규칙 위반 행위'라면 교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원에게 피해보호조치가 내려질 수 없다는 점을 교원에게 알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내부결재 받아 둡니다.

Q19. 학교 내 재심의 신청에 제한 기한이 있나요?

-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 학교 내 재심의 신청기간은 각 학교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현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시어 재심 신청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조치통보서에 명시하여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 제정·개정 절차를 통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Q20.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한은 조치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합니다. 평일 기준인가요?

- A** 아닙니다. 민법의 기일산정기준에 준하여 하시면 됩니다.
- 「민법」 제6장제155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 기한은 조치를 안 날, 즉 통보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하여 5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만료됩니다. 기일산정기준은 학생징계조정 위원회의 재심 신청 기간도 동일합니다.

Q21.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병원 등의 심리치료를 특별교육 이수로 인정할 수 있나요?

- A**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등의 심리치료가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진료확인서, 상담확인서 등을 근거로 특별교육으로 이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2.

퇴학 조치로 인해 가정학습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학생이 이미 출석정지로 연간 30일을 처분받았습니다. 이때 가정학습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가정학습 기간을 부여할 수 있나요?

A

부여가 가능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거 출석정지 처분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가정학습은 미인정결석 처리되지만, 처분으로써의 출석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2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지침에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라고 합니다. 이때 교육프로그램으로 해병대 캠프라든지 지리산 종주 같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여도 되나요?

A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출석정지로 인한 교육 공백 및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업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학습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학생에게 심리상담이라든지 흡연, 음주 등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24.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나요?

A

적절하지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준을 위반한 항목이 여러 개라고 할지라도 이를 통합하여 1개의 선도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며 개전의 기회를 가지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징계를 통하여 회복과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Q25.

1학년 때 학교내의 봉사조치를 받았습니다. 2학년이 되면 다시 학교내의 봉사부터 조치를 내려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징계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과 심리적 회복, 복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징계의 취지입니다. 교육과정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재학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적인 징계를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단,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가벼운 행위에도 반복된다는 이유로 다음 단계의 조치를 단순 기계식으로 처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내의 봉사 조치를 내렸다고 하여도 다시 학교내의 봉사 조치를 이행 시간을 달리하여 내릴 수도 있습니다.

Q2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 처분 받은 학생(학교내의 봉사, 특별교육이수)이 겨울방학 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내년 3월에 이수하게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징계는 학생의 반성, 성찰 및 회복을 위하여 조치 이후 바로 집행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 권장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월 이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학년 시기인 3월에 징계조치를 집행하는 것은 새 학년의 특성상 학생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고의적으로 징계 이행을 회피한다면 가정과 연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의 교육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학부모(보호자)와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도 조치를 계기로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성찰하며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행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선도기준에 징계조치 불이행 및 태도 불성실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징계 사유로써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의 징계 조치도 가능합니다.

Q27.

재심청구와 재심의 신청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A

재심청구와 재심의 신청 모두 초·중등교육법 상 징계에 대한 불복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위 두 개의 절차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우선 재심청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반면 재심의 신청은 재심청구와 달리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이에 관하여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즉 재심청구는 법정사항으로 퇴학 조치에 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재심의 신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징계 조치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학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Q28.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0점처리 되었는데 또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 처벌 아닌가요?

A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로 0점 처리를 하는 것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공정한 학업성적 관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학생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 절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한 징계를 통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도(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 지도(징계)의 목적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며 다음에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점 처리 외에 학교의 장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유사사례: 출결로 인한 징계, 부정 선거 운동으로 인한 징계, 범죄 행위로 인한 학교장 징계 등)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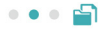
관련 법규

1.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 ▶ 「교육기본법」
 - ▶ 「초·중등교육법」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4.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관련 법규

1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25. 1. 21.>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5. 1. 21.>

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21.>

⑥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⑦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5.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 3. 23., 2022. 12. 27.>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22. 12. 27.]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2023. 9. 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2025. 4. 1.>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4. 1.>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4. 1.>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본조신설 2022. 12. 27.]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1.]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6.]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2. 19.>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 2. 19.>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 2. 19.>
[본조신설 2023. 6. 27.]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9조의4(의견수렴 등)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2. 3. 22.>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15.]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3. 4. 7.] [경기도조례 제7593호, 2023. 4.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02.>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1.11.02.>
- 3의2. “보호자”란 제2호에 따른 학생의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1.02.>
4.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정·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2.>

-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이하 “경영자”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교장 등”이라 한다),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④ 교육감과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경영자, 교장 등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③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1.11.02.>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학교 내외 및 사이버 공간 등에서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1.02.>
-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교육감, 교장 등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장 등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장 등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④ 교육감, 교장 등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장 등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6.>
- ③ 교장 등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장 등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④ 교장 등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6.>
- ⑤ 교장 등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제13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납부여부, 동의하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8.6.><개정 2021.11.02.>
- ② 교장 등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6.>
- ③ 교육감,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8.6.>
- ④ 교장 등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6.>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정보 열람 등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6.>
- ③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6.>

-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6.>
- ③ 교장 등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④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1.11.02.>
- 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1.02.>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8.6.>

② 교장 등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6.>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1.02.>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정·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2.>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9.8.6.> <개정 2021.11.02.>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교장 등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과 교장 등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19조의2(선거권 등) ①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유권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유권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02.>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③ 교육감, 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④ 교육감, 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③ 학생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생태계 보존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1.11.02.>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교장 등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6.><개정 2021.11.02.>

④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 <신설 2021.11.02.>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교장 등은 제1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교장 등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② 교육감과 교장 등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③ 교육감과 교장 등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④ 교육감과 교장 등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개정 2021.11.02.>
- ⑤ 교육감과 교장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개정 2021.11.02.>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 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개정 2021.11.02.>

③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개정 2019.8.6.>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4.>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5. 경기도의회 의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6.>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그 밖에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개정 2019.8.6.>

⑥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경기도학생인권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6.>

⑦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6.>, <개정 2021.01.04.>

⑧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9.8.6.> <개정 2021.11.02.>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6.> <개정 2021.11.02.>

제35조의2(자문기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조정에서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7]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 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경기도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8.6.>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9.8.6.>

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8.6.><개정 2021.11.02.>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1.11.02.>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개정 2021.11.02.>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2.>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개정 2015.2.27.>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시정권고 등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2.27.><개정 2021.11.02.>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사결과 사안이 중대하거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개정 2021.11.02.>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개정 2021.11.02.>

제45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6.>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6.>

제5장 보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1.02.>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정·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2.>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수당) 제35조에 따른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35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 제36조에 따른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7]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04.07>

부칙 <제7593호,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3. 1.] [경기도교육규칙 제932호, 2023. 2.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권실천계획 등

제2조 삭제 <2017.3.13.>

제3조(인권실천계획) 교육감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권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인권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각종 차별 방지에 관한 사항
2.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 안전망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소수 학생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7. 학생인권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인권교육용 교재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9. 학생·교원·보호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생인권 보호·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4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 위원은 지역별·학교급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참여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04.>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

제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제8조(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지원청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04.>

②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장 학생인권옹호관

제10조(학생인권옹호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인권옹호관”이라 한다)은 교육감 소속으로 두되, 지방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3.13.>

제11조 삭제 <2017.3.13.>

제12조 삭제 <2017.3.13.>

제13조 삭제 <2017.3.13.>

제14조(사무지원)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권옹호관 사무지원팀은 제2부교육감 소속의 생활교육과에 둔다. <개정 2017.3.13.><개정 2019.2.20.><개정 2022.8.25.><개정 2023.2.17.><개정 2025.2.28>

③ 제2항의 권역별 중심교육지원청은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21.11.04.>

제15조(보고) 인권옹호관은 반기별 활동실적을 각각 8월 말일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권옹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1.11.04.>

부칙 <제972호,2025.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생활인성교육과”를 “생활교육과”로 한다.

[③ ~ 생략]

4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91. 12. 20.][다자조약, 제1072호, 1991. 12. 23.]

채택일 1989. 11. 20./발효일 1990. 9. 2./당사국 수 193/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단, 제43조제2항 개정(채택일 1995. 12. 12./발효일 2002.11.18.)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 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 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대리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아동도서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 하여야 한다.

제18조

-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 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 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 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 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능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 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 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약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 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 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의 법
-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2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 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이내에 실시 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이전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3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도움 주신 분들

총괄	김영명 (생활교육과 과장)	
주관	이영진 (학생생활교육담당 장학관)	
기획	이승환 (학생생활교육담당 장학사)	
위원	김태환 (안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장)	김석호 (화성반월중 교감)
	유재환 (포천일고 교감)	임혜은 (호곡초 교감)
	강문구 (금촌고 교사)	강성구 (포천고 교사)
	김유래 (만안초 교사)	백주열 (두일중 교사)
	서유리 (명학초 교사)	손규덕 (백마중 교사)
	손지연 (내촌중 교사)	양희석 (경기폴리텍고 교사)
	유재민 (성사고 교사)	이정민 (남양주월문초 교사)
	이진범 (동화고 교사)	최명훈 (양주고 교사)
	이창휘 (학생인권옹호관)	이동주 (학교생활인성담당관)
	박성미 (변호사)	이래훈 (변호사)
검토	김도영 (장학사)	노정철 (장학사)
	유미화 (장학사)	황정숙 (장학사)
	김혜영 (학생인권옹호관)	임지혜 (학생인권옹호관)
	서경선 (소안초 교감)	엄혁주 (마송중앙초 교감)
	길윤상 (장학사)	김현숙 (장학사)
	김현숙 (장학사)	김혜승 (장학사)
	김효철 (장학사)	남상미 (장학사)
	박진주 (장학사)	방경란 (장학사)
	신주하 (장학사)	안지현 (장학사)
	원성연 (장학사)	이미경 (장학사)
지원	이승희 (장학사)	임 은 (장학사)
	임원주 (장학사)	임원주 (장학사)
	전혜성 (장학사)	조소현 (장학사)
	최정숙 (장학사)	최정숙 (장학사)
	최주영 (장학사)	최혜정 (장학사)
	한진영 (장학사)	홍효숙 (장학사)
	황정환 (장학사)	
	박현아 (생활교육과 주무관)	

- 발 행 처 경기도교육청
- 발 행 일 2026. 3.
- 디 자 인 PP(피피)디자인 031)247-2227

이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goe.go.kr/> (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생활교육과)



2 0 2 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